

2013년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CONTENTS

제1장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

제1절 개요	10
1. 국민연금 제도란	10
2. 용어정의 및 가입자 종별	10
 제2절 사업장 및 사업장가입자 자격관리	 13
1. 사업장 신규적용	13
2. 사업장 내용변경 신고	13
3. 사업장 탈퇴	14
4. 사업장 분리적용 신청	15
5.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15
6.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 신고	17
7.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	17
8.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18
9.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	19
10. 기준소득월액 결정	19
11. 건설현장사업장	27
 제3절 외국인 가입자 관리	 29
1.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관리	29
2. 사회보장협정 관련사항	30
 제4절 징수관리	 34
1. 의의	34
2. 연금보험료	34

3. 연금보험료의 납부절차 등	35
4. 연금보험료 미납 시	36
5. 과오납금 반환청구	37

제5절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38

1.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38
2. 지원금액 및 방법	41
3. 지원 및 제외절차	42
4. 부정수급 및 환수 등	43

제6절 제증명 발급 및 가입자 자격확인 45

1. 사업장 및 사업장가입자 가입증명 발급	45
2. 가입자의 자격확인 청구	47
3. 자격변동확인통지서	47
4. 국민연금 가입내역안내	48

제7절 신고 편의제도 49

1. EDI 서비스	49
2.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	56

제2장

국민연금 혜택

제1절 급여의 종류 64

1. 개요	64
2. 연금급여의 특징	64
3. 국민연금 수급자	65
4. 노령연금	65
5. 장애연금	66

6. 유족연금	67
7. 반환일시금	68
8. 사망일시금	68

제2절 연금급여액 69

1. 연금급여액의 구성	69
2. 연금급여액 수준	69
3. 급여 종류별 급여액	71

제3절 수급기간 및 수급방법 74

1. 수급기간	74
2. 수급일	74
3. 수급방법	74

제4절 둘 이상 급여가 발생한 경우(급여의 조정) 75

1. 급여의 조정	75
2. 중복급여의 조정(국민연금 급여간 조정)	75
3. 연금의 중복급여 조정 (국민연금 급여와 다른 법에 따른 급여간 조정)	75

제3장

부록

부록 1 권리구제 제도	78
부록 2 국민연금법령	80
부록 3 서식자료	98
부록 4 지사 연락처 및 관할구역	99
부록 5 예상연금 월액표	106

제1장

사업장 실무

제1절 개요

제2절 사업장 및 사업장가입자 자격관리

제3절 외국인 가입자 관리

제4절 징수관리

제5절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제6절 제증명 발급 및 가입자 자격확인

제7절 신고 편의제도

사업장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국민연금 실무안내

* 4대 보험 공통신고

입사(취득)또는 퇴사(상실) 신고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한곳에만 신고해도 한꺼번에 처리 가능하며 입·퇴사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해당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잘못된 경우에는 4대보험 해당기관에 사업장 내용 정정신고서를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1)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공통)

- 신고대상 :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
(외국인 및 재외국민 포함)
- 제출서류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1부
- 취득일(소득월액) : 입사일(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월평균 급여)
→ 2일 이후 입사한 경우 국민연금은 취득월 납부 희망(1), 미희망(2) 여부 기재

2) 사업장 가입자 상실신고(공통)

- 제출서류 :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1부
- 상실일 : 퇴직일 다음날
→ 상실일이 2일 이후인 경우 상실월 보험료도 납부해야 함
→ 건강보험 상실신고 시 해당연도 보수총액과 산정월수, 평균급여 반드시 기재, 고용보험은 상실사유 정확히 기재

| 취득·상실 4대 보험 공통신고서 작성·제출 시 유의사항 |

공통신고 유의사항		• 사업장관리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즉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기재 • 공통신고 대상 : 취득 상실신고 및 가입자 변경사항 중 성명·주민등록번호
취득신고 유의사항	국민 연금	• 취득일이 2일 이후인 경우 납부희망(1)·미희망(2)을 반드시 기재, 납부희망(1)시 해당월 연금보험료 부과 → 건강보험은 2일 이후 취득의 경우 보험료 부과되지 않음 → 2011. 1. 25 입사 후 미희망시 2011. 2월분부터 부과

상실신고 유의사항	국민 연금	• 퇴직일의 다음날을 상실일로 기재 → 2013.1.5 퇴사한 경우, 1.6 상실 및 1월분까지 부과 • 초일취득·당월상실하는 경우 납부희망여부를 반드시 기재
	건강 보험	• 해당연도 보수총액과 산정월수 기재 → 전년도 보수총액은 매년 2월 보수총액을 신고한 경우 기재 불필요
	고용 보험	• 상실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여부가 결정됨으로 사유와 기호를 정확히 기재 → 착오신고시 고용보험에 직접 문의요망

* 국민연금 고유업무 신고

4대 보험 신고사항 중 해당기관에서 시행하는 고유업무는 해당기관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고유업무로는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국민연금 납부예외(재개)신고,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1) 가입자 내용정정 신고

- 신고대상 : 착오신고하여 이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 제출서류 :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신고서 + 입증서류

2) 납부예외 신고

- 신고대상 : 휴직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 제출서류 :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 입증서류(휴직발령서 등)
- 납부예외 기간 : 휴직기간

3) 납부재개 신고

- 신고대상 : 납부예외 기간 경과 후 복직한 경우
- 제출서류 :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서
- 납부재개일 : 복직일

| 납부예외(재개) 신고 시 유의사항 |

납부예외	- 예외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예외사유가 없어진 날 (납부재개일)이 속하는 달까지 신청 가능.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산재요양기간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납부예외 신청서만 제출. 다만, 기타 휴직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서에 휴직계 등 증빙자료 제출 - 산전후휴가는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인 경우 산전후휴가일로부터 90일, 우선지원비 대상 사업장은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는 시기부터 30일간 납부예외 신청 가능
예외연장	- 납부예외 기간 경과시 납부예외 연장신청을 하거나 납부재개 신고 - 납부예외 경과 후 퇴직한 경우 납부예외 연장신고 후 상실 신고
납부재개	- 납부재개일이 2일 이후인 경우 해당월 납부 희망 또는 미희망 여부를 반드시 기재 - 취득시 소득신고와 마찬가지로 기준소득월액 기재

* 기준소득월액 결정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을 기초로 매년 결정됩니다.

1) 최초 입사시 기준소득월액 결정

- ① 최초 입사시에는 사업장에서 신고한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됨
- ②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 시 각종 수당(시간외 수당 포함), 휴가비, 연간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모든 소득을 감안한 월평균 급여를 신고해야 함

2)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결정

- ① 결정대상 : 전년도 12.1이전 입사자
- ② 결정방법 : 전년도소득총액 ÷ 전년도 근무일수 × 30
- ③ 적용기간 :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3)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 ① 조정대상 : 2013.7.1. 현재 상한액 초과자 또는 하한액 미만자
- ② 조정시기 : 2013.7.1.(매년 7.1. 조정)
- ③ 2013년 6월까지 적용되는 상하한액 : 상한액 389만원, 하한액 24만원

| 2013년 소득총액신고 안내 |

2009년부터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한 경우 별도로 소득총액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과세자료 기준으로 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개인사업자 제외)

적용기간		• 해당연도(2013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계산방법		• (2012년)전년도소득총액 ÷ 총 근무일수 × 30
업무 일정	5월	• 소득총액신고안내 : 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국세청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6월	• 기준소득월액결정통지(6.22. 경) 및 정정신청
	7월	• 연금보험료 고지(8.10. 납부기한)
적용예시		• 2012.12.1. 입사(복직) : 2012.12~2013. 6., 2013.7~2014. 6. • 2012.12.2. 입사(복직) : 2012.12~2014. 6.

| 기관별 연락처 |

기 관 명	문의 내용	전화번호	홈페이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 접속 및 운영관련	02)2240-1155 ~1160	www.4insure.or.kr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관련	국번 없이 1355	www.np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관련	1577-1000	www.nhic.or.kr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고용보험 관련	국번 없이 1350, 1588-1919	www.ei.go.kr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관련	1588-0075	total.kcomwel.or.kr

제1절 | 개 요

1. 국민연금 제도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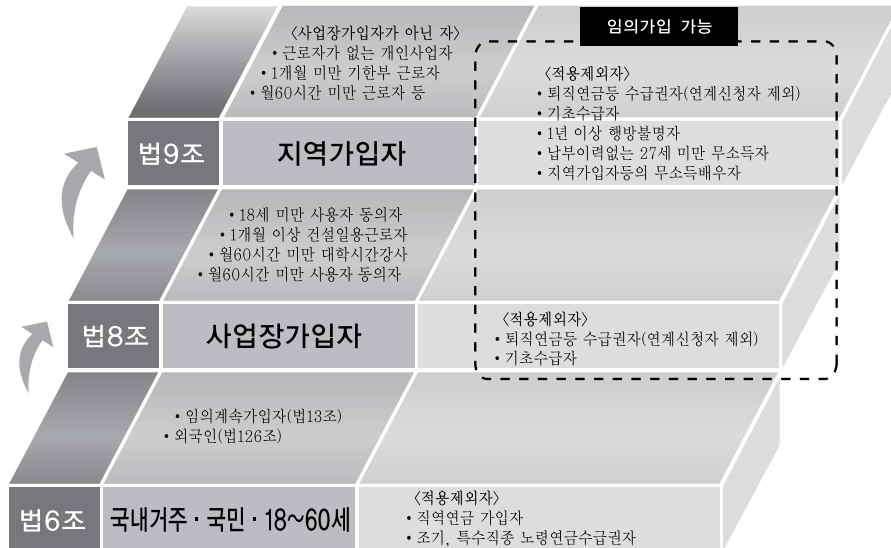
“나”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사회적으로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우리”를 위한 제도로서,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일정한 사유(노령, 장애, 사망)로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어졌을 때 연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 용어정의 및 가입자 종별

가. 용어정의

용 어	내 용
사업장	•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 ※ 사업장별로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신고·납부함
근로자	•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 (법인의 이사·임원 포함)
사용자	•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소득	• 근로자 :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금액(근로소득) • 개인사업장 사용자 :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사업소득금액)
기준소득 월액	•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민연금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
사업장 가입자	•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제8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특수직종 근로자	• 상시 껀내작업에 종사하는 광원 (입껀수당 지급자) •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

나. 적용체계



다. 가입자 종별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람들을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신고와 납부를 모두 본인이 하고 있으나,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신고와 납부를 사업장 사용자(사업주)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처음 고용하는 경우 우선 사업장 성립에 대한 신고를 하고 그에 속한 가입자들에 대한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모두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한 사람들에 대한 사업장가입자 상실신고와 더불어 사업장 탈퇴신고를 해야 합니다.

라. 공단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

※ 국민연금 사업장 관련 신고는 “사업장”과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부분으로 구분

신고사유	신고서식	비고 및 유의사항
사업장 신규적용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가입대상자(사용자와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도 같이 제출
사업장 내용변경	•사업장내용변경신고서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명칭 등 변경 시 제출
사업장 탈퇴	•사업장탈퇴신고서	휴·폐업, 최종 근로자 퇴사 등 근로자가 없는 경우 제출
근로자 채용	•자격취득신고서(외국인 포함)	근로자 1인 이상을 채용 시 당연적용 사업장 해당신고도 같이 제출
근로자 퇴사	•자격상실신고서	최종 근로자 퇴사 시 사업장 탈퇴신고도 같이 함
무보수 휴직한 경우	•납부예외신청서	납부예외 신청이 없으면 납부의사가 있는 것으로 봄 ※무보수 대표이사의 경우 상실 대상임
건설현장별 사업장 성립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설현장사업장용) •일괄경정고지신청서 ※ 근로자 자격취득신고는 가급적 EDI로 신고	현장에 근무하는 상용직근로자는 일용 근로자와 별도로 사업장취득 ※ 대표이사는 본점과 현장간 분리전 출입 안됨
사업장 분리적용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지점 성립) •분리적용 사업장가입자 전입신고서 (본·지점간 이동하는 근로자) ※ 기 성립된 사업장 간 분리적용은 분리적용신청서 제출	신규로 분리적용하는 경우 – 당연적용 사업장 해당 신고서의 분리 적용사업장 해당여부에 체크

- ② 기타 문의사항 국번 없이 1355
- ② 서식다운로드 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
 - 주요 서비스 – 신고서 찾기 – [연금정보] – [서식자료]

제2절 | 사업장 및 사업장가입자 자격관리

1. 사업장 신규적용

가. 사업장 당연적용 대상

- ◎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 대표이사 1명만 있는 법인사업장도 당연적용 대상

나. 사업장 적용일

- ◎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때

다. 신고

- (1) 신고의무자 : 사업장 사용자
- (2) 신고기한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라. 신고서류

- (1)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1부
- (2)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1부

마.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 (1) 4대보험 공통신고 시 해당 기관에 반드시 체크해야 함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2) 사용자의 자격취득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함

2. 사업장 내용변경 신고

가. 변경대상

- ◎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명칭, 주소 등이 변경된 사업장
※ 개인사업장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는 사업장 내용변경 대상이 아니라 기존 사업장 탈퇴 후 사업장을 신규로 적용해야 함

나. 신고

- (1) 신고의무자 : 사용자
- (2) 신고기한 : 내용변경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다. 제출서류

- ◎ 사업장내용변경신고서 1부(필요시 법인등기부 등본 등 제출)

3. 사업장 탈퇴

가. 탈퇴대상

- (1) 휴업이나 폐업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
- (2) 합병이나 분할로 소멸되는 사업장
- (3) 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장

나. 사업장 탈퇴일

- (1) 휴업일 당일, 폐업일 다음날
 - (가) 폐업일이 초일인 경우에는 폐업일로 적용 가능
- (2) 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최종 상실일

다. 신고

- (1) 신고의무자 : 사용자
- (2) 신고기한 :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3) 제출서류
 - (가) 국민연금 사업장탈퇴신고서
 - (나)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라. 사업장 탈퇴신고 시 유의사항

- (1) 근로자의 일부라도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이 지급될 경우 탈퇴신고를 할 수 없음
 - (가) 노동쟁의로 인한 파업 또는 직장폐쇄는 탈퇴신고대상에서 제외함
- (2) 휴업기간 중 조업이 재개되었거나, 휴업기간이 종료된 경우 재가입 신고를 해야 함
- (3) 통·폐합사업장 자격취득일 및 자격상실일
 - (가) 합병 후 사업장을 흡수한(신설) 사업장은 흡수된(소멸) 사업장의 가입자에 대해 자격상실일과 동일한 일자로 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함(자격취득부호 “9”)

4. 사업장 분리적용 신청

가. 신청대상

- (1) 본점 사업장을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 등과 분리하여 각각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장
 - (가) 보험료 사후 정산을 위한 건설현장사업장으로 가입하는 경우 포함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분리적용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가) 법인격이 서로 다른 법인사업장
 - (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개인사업장

나. 분리적용 신청

- (1) 신청자 : 분리적용을 희망하는 본점 사업장의 사용자
- (2) 제출서류
 - (가) 본점 또는 지점 모두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각각 1부
 - 지점은 분리적용 해당 체크 및 본점(모사업장)내역 기재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각각 1부
 - (나) 본점은 이미 가입되어 있고 지점이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분리적용 내용 등 기재) 1부(지점 사업장 성립)
 - 분리적용 사업장가입자 전입신고서 1부(본 · 지점간 근로자 이동 시)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1부(지점 근로자 신규 채용 시)
 - (다) 본점과 지점이 모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분리적용사업장신청서 1부
 - 분리적용 사업장가입자 전입신고서 1부(본 · 지점간 근로자 이동 시)

5.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가. 신고대상

- (1)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용자 및 근로자
- (2) 근로자 중에서 18세에 도달한 사람
 - ※ 18세 미만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 가능
- (3) 일용·단시간 근로자로 1개월 이상, 월 60시간(주15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
- (4)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연금지급이 정지된 사람

* 소득있는 업무 종사 : 소득이 월1,891,771원(2012년 기준, 사업소득자 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 근로소득자 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5) 월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중 생업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대학시간강사 또는 사용자 동의를 받아 근로자 적용 희망하는 사람

나. 근로자의 개념

- (1) 근로자 :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 포함)
- (2)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 (가)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 ※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신고 대상임
 - (나) 법인의 이사 중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사람
 - (다)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 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함
 - 대학시간강사
 -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 ※ 근로시간을 월로 환산하기 곤란한 경우 주당 평균 15시간 기준 적용
- (3) 생업 목적 판단 기준 : 생업 목적은 원칙적으로 “다른 직업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다른 직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생업 목적에 해당되지 않음
 - (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이미 가입되어 있거나.
 - (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소득신고자에 한함)로 사업자등록자의 경우 또는 다른 공적 소득이 많은 경우

다. 자격취득시기

- (1) 사업장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때
- (2)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근로자 또는 사용자로 종사하게 된 때
- (3)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18세 이상이 된 때
- (4) 임시·일용·단시간근로자가 당연적용 사업장에 사용된 때 또는 근로자로 된 때
- (5)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의 18세 미만 근로자의 가입신청이 수리된 때
- (6)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의 월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대학시간강사 제외)의 가입신청이 수리된 때
 - ※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청구 또는 공단 직권으로 확인 시 자격 취득

라. 제출서류

- (1)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1부
- (2)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가) 특수직종근로자의 자격취득 신고

- 광원 : 입갱수당 지급이 명시된 임금대장 사본 또는 갱내작업 종사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부원 : 선원수첩이나 선원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기타 해운항만청의 공인을 받은 승무원 명부 등 부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 신고

가. 신고대상

- (1) 내용변경(4대기관 공통) : 성명, 주민등록번호, 특수직종근로자 해당여부 등
- (2) 내용정정(국민연금 고유) : 취득일, 상실일, 기준소득월액 등
 - ※ 내용정정 신고는 명백한 착오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단순한 사정변경은 정정대상이 아님에 유의

나. 신고

- (1) 신고의무자 : 사용자
- (2) 신고기한 : 내용변경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내용정정의 경우 착오발견 즉시

다. 제출서류

- (1) 내용변경(4대기관 공통) :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4대보험 공통내용 변경 신고 시)
- (2) 내용정정(국민연금 고유)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신고서

7.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

가. 신고대상

- (1) 사용관계 종료(퇴직)
- (2)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
- (3) 60세 도달
- (4) 사망
- (5) 60세미만 특수직종 근로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 (6) 60세미만자로서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 (7) 다른 공적연금 가입 및 퇴직연금등 수급권 취득

나. 제출서류

-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1부

다. 자격상실시기

- ‘각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 (1) 다만,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했거나 퇴직연금등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자격상실일임
 - (2) 근로계약이 없는 일용직(단시간)근로자가 계속 근로 중 월 60시간미만을 사유로 자격상실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해당 월 기산일’로 상실처리

예 시

- ◆ 2012. 9. 4.부로 국민연금가입자격을 취득한 단시간근로자 C가 9. 4.~10. 3. 그리고 10. 4.~11. 3.까지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다가 11. 5. 퇴사함
 - C의 자격상실일은 퇴사일의 다음날인 11. 6.이 됨
- ◆ 2012. 9. 4.부로 국민연금가입자격을 취득한 단시간근로자 D가 9. 4.~10. 3. 그리고 10. 4.~11. 3.까지는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다가 11. 4.~12. 3.까지 월 60시간미만 근로함
 - 자격상실일 : 근로자에서 제외된 날(해당 월의 기산일)인 11. 4.

- (3) 또한, 분리적용 사업장간에 전출된 자는 전출당일이 자격상실일임

8.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가. 납부예외

- (1) 신청대상 : 다음 사유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 (가) 휴직중인 경우
 - 휴직기간 중 급여가 휴직 직전 적용중인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납부예외 인정
 -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휴업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납부예외대상이 아님
 - (나) 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산재요양

● 산전후휴가 납부예외인정 기간

-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소규모) 사업장인 경우 : 90일
-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 최종 30일

(2) 제출서류

- (가)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 □ 납부재개신고)서
- (나) 휴직발령서 등 납부예외신청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나. 납부재개 또는 상실신고

- (1) 납부예외자가 복직하였을 경우 복직일을 “납부재개일”로 기재하여 납부재개신고서 제출
- (2) 납부예외자가 휴직(납부예외)기간 중에 퇴사하였을 경우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제출

다. 기타 유의사항

- (1) “납부예외일”은 납부예외사유가 발생한 날임
 - (가) 예시 : 휴직일
- (2) 휴직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납부재개예정일”란에 복직예정일 기재
- (3) 휴직자가 복직하였을 때에는 복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보험료 납부 (다만, 복직일이 초일인 경우와 복직하는 달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월 보험료 납부)

9.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가. 용어정의**

- (1) 사업장가입자가 둘 이상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함(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이면서 다른 사업장의 사용자인 경우 포함)

나. 기준소득월액 조정 결정

- (1)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로 확인된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
 - ※ 합산한 소득이 최고 기준소득월액을 넘는 경우 소득 비율로 조정 후 부과

10. 기준소득월액 결정**가. 기준소득월액**

- (1) 개념
 - (가) 연금보험과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중 비과세 근로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며, 사용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국민연금법 시행령」제5조에서 정한 최저 기준소득 월액부터 최고 기준소득월액까지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 지는 금액

(2) 상한액과 하한액

- (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납부 예외자 제외)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이 변동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함
- (나) 2012.7월부터 2013.6월까지 적용할 최저·최고 기준소득월액은 각각 24만원과 389만원임

나. 소득의 범위

(1) 사용자(법인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에 한함)의 경우

- (가) 농업·임업·어업소득 및 「소득세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부동산임대 소득 포함)
 - ※ 동일 사업자등록번호로 둘 이상 업종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을 합산 고지하고,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로 각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각 사업장별로 부과

(2) 근로자의 경우

- (가) 「소득세법」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동법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소득
 -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의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은 국세청임

다. 자격취득 및 납부재개 시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 (1)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및 납부재개신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산출한 소득월액을 기재하여 신고함
 - (가) 월이나 주 또는 그 밖에 일정 기간으로 소득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
 - (나) 일·시간·생사고 또는 도급으로 소득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나 납부를 재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개월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 (다) (가)와 (나)에 따라 소득월액을 계산하여 정하기 어려운 자의 경우에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나 납부를 재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개월 동안에 그 지방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 (라) 자격취득 및 소득월액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소득자료가 있으면 소득자료대로, 소득자료가 없으면 중위수소득*으로 결정함

* 전년도 12월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체의 중간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

(2) 근로자 입사(복직)시 소득월액 신고 기준

- (가) 사업장에 입사(복직)한 근로자의 소득월액은 아래 기준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금액으로, 입사(복직) 당시 지급이 예측 가능한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
- 급여 항목별 입사(복직)시 소득월액 포함 여부

구 분	포함해야 하는 소득	포함하지 않는 소득
급여 항목	기본급, 직책수당, 직급보조비, 정기(명절)상여금, 기본 성과급, 휴가비, 교통비, 고정 시간외 근무수당, 복지연금, 기타 각종 수당 등	비과세소득(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출산이나 6세 이하 보육수당 월 10만원 이내 등),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실적급 등
판단 기준	입사(복직) 당시 근로계약서, 보수 규정 등에서 지급하기로 확정된 모든 과세소득	소득세법 상 비과세소득, 입사(복직) 당시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소득

- 소득월액 산정방법 : 입사(복직) 시점에 따른 근로자간 신고 소득월액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사(복직) 당시 약정되어 있는 급여 항목에 대한 1년치 소득 총액에 대하여 30일로 환산하여 결정합니다.

☞ 소득월액 : 입사(복직) 당시 지급이 약정된 각 급여 항목에 대한 1년간 소득 총액 ÷ 365 × 30

예 시

- ◆ A사에 2013년 3월 5일, 월급제로 입사한 홍길동의 급여 내역
- 기본급 : 1,000,000원 ● 교통비 : 월 100,000원 ● 고정 시간외 수당 : 월 200,000원
 - 분기별 상여금 : 기본급의 100%(1,4,7,10월 지급)
 - 하계휴가비(매년 7월 지급) : 500,000원



신고내용	맞는 신고	착오 신고
신고 급여 항목	기본급, 교통비, 고정 시간외 수당, 상여금, 휴가비 (지급이 약정된 급여 항목 전체 신고)	기본급, 교통비, 고정 시간외 수당 (입사 월에 지급된 급여 항목만 신고)
산정식	$\{(1,000,000 + 100,000 + 200,000) \times 12 + (1,000,000 \times 4) + 500,000\} \div 365 \times 30$	$1,000,000 + 100,000 + 200,000$
신고소득 월액	1,652,055원 (국민연금에 신고해야 할 소득월액)	1,300,000원 (실제 소득보다 낮게 착오 신고한 소득월액)

(3) 적용기간

- (가) 2012년 12월 1일 이전 자격취득자는 2013년 6월까지 적용
- (나) 2012년 12월 2일 이후 자격취득자는 2014년 6월까지 적용

(4)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조정에 따른 조정결정

- (가) 조정대상 : 2013년 7월 1일 현재 신고한 소득이 최저 기준소득월액 미만인 가입자와 최고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가입자 전체
- (나) 조정시기 : 2013년 7월 1일(매년 7월)

라.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결정(소득총액신고)

(1) 기준소득월액 결정 및 적용기간

(가) 결정방법

- 전년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천원미만 절사)을 소득월액으로 결정
- 사업장에서 신고기한까지 소득총액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입자의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을 평균소득월액의 변동률을 기준으로 조정한 금액으로 공단에서 결정

(나) 적용기간

-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

(2) 신고 및 결정대상

- (가) 사업장가입자로서 전년도중 1개월 이상 (전년도 12월 1일 이전 입사자) 해당 사업장에 종사한 자(12월 1일 현재 납부예외중인 자 제외)
 - 신고대상 : 개인사업장 사용자, 과세자료착오 및 연말정산 미신고 근로자
 - ※ 2009년도부터 과세자료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소득총액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국세청에 신고된 과세자료를 직접 입수 처리하고 있음

(3) 신고기한 및 방법

(가) 신고기한 및 신고의무자

- 매년 5월 말일까지 사용자가 신고

(나) 유의사항

- 근무 중인 자가 누락된 경우에는 소득총액신고서에 기재하고,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사업장 분리적용 또는 통·폐합으로 인하여 종전 사업장에서 자격을 상실한 후 현재의 사업장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총액과 해당근무일수를 합산해야 함
- 소득총액신고서상에 신고대상자로 출력되었으나 이미 퇴사한 경우에는 두 줄을 그은 후 “상실”이라고 기재하고,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마. 기준소득월액 결정내용의 통지

(1) 신규취득자의 기준소득월액 통지

- (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변동 확인통지서”를 매월 고지서에 동봉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며 사용자는 가입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함

(2) 정기결정의 통지

- (가) 공단은 매년 6월중에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통지서”를 통지하며 사용자는 모든 가입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함
 -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신고를 해야 함

바. 소득총액 적정신고 확인·정리

(1) 개요

- (가) 매년 하반기 “소득관련 공적자료”와 대사하여 소득총액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정리

(2) 대상

- (가) 개인사업장 사용자

(3) 내용

- (가) “소득관련 공적자료”와 비교하여 소득총액신고가 낮게 된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에 기준소득월액 정정신고 안내문 발송
- (나) 소득총액을 소득관련 공적자료에 비해 낮게 신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정기결정 시점인 7월로 소급하여 기준소득월액을 조정

참고 | 2013년도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안내

소득총액신고란?

◆ 소득총액신고란

- 사업장가입자에게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 전년도의 소득총액을 신고하는 절차

◆ 전년도 소득총액

- 2012.01.01. ~ 2012.12.31. 기간의 소득총액

※ 연도 중 입사자(사업개시자) : 입사일(사업개시일)부터 ~ 2012.12.31.

소득총액신고 업무흐름

◆ 주요업무 흐름

- 2013. 4월 과세자료에 의한 결정 대상자와 소득총액 신고대상자 구축
- 2013. 5월 신고대상자 소득총액 신고안내 및 소득총액신고서 발송
- 2013. 5월 소득총액 신고(사업장)
- 2013. 6월 기준소득월액 결정 통지(공단)
- 2013. 7월 변경 기준소득월액에 따른 보험료 고지(~2013.6월)
- 2013. 10월 공적자료 대비 소득적정신고 여부 확인(사업장 사용자)

소득총액 신고요령

◆ 신고대상

- 2012.12.1.이전부터 해당 사업장에 근무 중인 가입자(납부예외중인 자 및 2012.12.2이후 납부재개자는 제외), 과세자료에 의한 결정대상자 제외

※ 소득총액신고서에 기재된 대상자

◆ 신고할 사항

- 근무일수 : 2012년도 중 해당 사업장에 근무한 일수(휴직일수 제외)
- 소득총액 : 위 근무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지급한 급여
 - 사용자(법인 아닌 사업장) : 해당 사업장의 사업소득(이월결손금 공제전 금액)을 신고
종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 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첨부된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명세서 상 ⑩번 소득금액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현 근무처의 급여합계액(16번),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이외의 비과세소득(주식매수 선택권비과세, 우리스주조합 인출금 비과세 등)

◆ 신고기한

- 사용자와 해당 근로자 : 2013년 5월말까지

◆ 신고방법

- 공단에서 송부한 소득총액신고서에 신고대상자의 2012년도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무일수 및 소득총액을 작성하여 관할지사에 직접,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EDI로 신고가능)

◆ 기준소득월액 적용기간

- 2012.12.1.이전 취득자 : 2012년도 소득총액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소득월액을 2013년 7월~2014년 6월까지 적용
- 2012.12.2.이후 취득(납부재개)자 : 취득시의 기준소득월액을 2014년 6월까지 적용
☞ 신고소득이 2013년 7월 적용하는 최고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기준 소득월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013.7월에 변경됨

◆ 소득 적정신고 여부 확인

- 2013. 6월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 시 사업장에서 신고한 내역을 정확하게 확인 하시고 필요한 경우 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2013.10월 공적자료로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기준소득월액 적정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낮게 신고된 경우에는 2013년 7월로 소급적용합니다.

| 작성방법 예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⑨귀속연도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⑩감면기간	부터	까지	
근무처별 소득명세	구 분	주(현)	중(전)	중(전)	⑯-1납세조합	합 계	
	⑪근 무 처 명	□□상사	○○기업				
	⑫사업자등록번호						
	⑬급 여	15,000,000	3,000,000			18,000,000	
	⑭상 여	5,000,000	500,000			5,500,000	
	⑮인 정 상 여						
	⑮-1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⑯계	20,000,000	3,500,000			23,500,000		
비과세 소 득	⑰ 국외근로	⑰-1 야간근로 수당	⑰-2 출산·보육수당	⑰-4 연구보조비	⑰ 수련보조수당	⑳ 비과세소득 계	
	1,000,000					1,000,000	
2013년도 소득총액 신고서							
순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취득일자	2012년도 귀속		③ 2012년도 소득총액	
				근무기간			② 휴직일수
				① 시작	종료		
1	홍길동	123456 - *****	2012. 3. 1.		12. 31.	20,000,000	

①②③번은 사업장에서 작성

(☞ ○○기업에서 2월 28일 퇴사 후 □□상사에 3월 1일 입사한 경우)

▶ 근무일수 산출 사례

- 동일 사업장에 2012.1.1.~3.25. 2012.8.1.~12.31.근무 : 153일(8~12월)

소득총액 신고요령

◆ 전산매체(디스켓, CD) 신고

- 공단에서 제공하는 layout형식으로 신고

◆ EDI 신고

- 국민연금 EDI(<http://edi.nps.or.kr>)

① “송수신문서” - “연금통지문서” - “소득총액신고서”조회 ▶ ② 개인별 소득총액 입력 ▶ ④ “신고서발송”

- 사회보험 EDI

① “수신함” - “소득총액신고(년)”수신 ▶ ② “문서조회” ▶ ③ 개인별 소득총액 입력 ▶ ④ “문서저장 및 송신”에서 파일 송신

◆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신고

- 100인 미만 사업장은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소득총액 신고 가능

11. 건설현장사업장

가. 사회보험 사후정산제도란?

- (1) 건설업체가 건설일용직에 대한 사회보험료(연금·건강) 납부 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 (하도급자 ■ 원도급자 ■ 발주기관)하면, 예정가격에 별도로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기성금 지급 시 당해 금액을 지급하고 공사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임

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에 사후정산제를 도입한 배경은?

- (1) 소규모 영세 건설업체, 특히 하도급업체의 사회보험료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일용근로자들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관련 단체에서 보험료 정산을 건의 하였고, 정부에서 사회보장 확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함

다. 사후정산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 (1)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가 2006.12.29.개정되었으므로, 개정일 이후 입찰 공고 분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음
- (2)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작성, 입찰·계약 및 최초 기성대가 지급 등 소요기일을 감안 '07. 4월부터 적용
- (3) 민간건설 공사는 2008.1.1.부터 적용할 수 있음

라. 사후정산제의 적용 공사 범위는?

- (1) 정부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사와 민간건설 공사
- (2) 관련기준 및 주무부처(유권해석기관)
 - (가) 정부공사 : 국가계약법령 및 예규 적용(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
 - (나) 지방자치단체 공사 : 지방계약법령 및 예규(행전안전부 회계공기업과)
 - (다) 민간건설 공사 : 건설산업기본법(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마. 하도급자가 사회보험료를 지급받기 위한 절차는?

- (1) 일용근로자를 건설현장별로 국민연금·건강보험에 가입한 후 현장명이 나오는 국민 연금·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함

건설일용자 국민연금 적용

구 분	적 용 절 차
사업장 적용신고 ↓	- 건설현장에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건설현장별 사업장적용신고 - 당연적용해당신고서, 일괄경정고지신청서, EDI 가입신청서 제출(삭제) - 사업장 최초 적용신고는 인근 국민연금지사에 우편, FAX, 방문하여 공동신고하고, 가입 이후부터 EDI로 신고 ※ EDI 홈페이지(http://edi.nps.or.kr)에서 회원가입 후 가입자 변동 신고 및 보험료 부과내역 확인
보험료 부과 ↓	- 당월 15일까지의 자격변동신고를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보험료 산정 및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일까지 사업장에 고지서 송달 - 사업장에서는 고지내역을 확인하여 가입자 변동내역 신고
가입자 신고 (취득/상실/ 소득변경) 가입자 신고 (취득/상실/ 소득변경) ↓	- 가입자 취득신고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한 때(근로 계약서가 없는 경우 실제 1개월간 20일 이상 근무하게 된 때) - 가입자 상실신고는 퇴사하거나 20일미만 근무하게 된 때 - 소득변경신고는 일용근로자의 소득이 전월보다 높거나 낮을 때 - EDI로 신고하되, 다음달 5일까지 신고 - 취득 월의 다음 달부터 퇴사 월까지 매월 보험료 납부 ※ 취득일이 초일인 경우와 취득월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취득월 보험료 납부
일괄경정부과 ↓	- 건설현장 사업장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매월 5일까지의 자격변동신고사항을 기초로 일괄 경정부과 후 EDI로 전송 - 사업장에서 매월 6일 EDI시스템에서 일괄경정부과 내역서 수신 후 경정 부과금액으로 납부
수시경정부과 ↓	- 공단의 일괄경정부과 전·후에 사회보험 사후정산을 위해 부득이 보험료 납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일괄경정부과금액이 상이한 경우 - 보험료 납부기한일의 1일전까지(토·일·공휴일인 경우 전날) - 경정된 부과내역을 확인한 후 보험료 납부 - EDI 시스템에서 신청 하거나 지사에 내방(전화)하여 신청
보험료 납부	- 보험료 납부기간 : 매월 7일 ~ 10일(휴일인 경우 다음 날) - 건설현장 사업장은 공단의 일괄경정부과 또는 수시경정부과 금액으로만 납부해야 함

제3절 | 외국인 가입자 관리

1.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관리

가.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적용대상여부 확인

(1)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적용대상

- (가) 「국민연금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외국인 사용자 또는 근로자(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
- (나) 「무국적자의지위에관한협약」과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에 따라 내국인과 동등 대우를 받도록 되어 있는 무국적자나 난민

(2)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대상

- (가) 다른 법령 또는 조약(협약)에서 「국민연금법」적용을 배제한 자
예) 외교관, 영사기관원과 그 가족 등
- (나)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 (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자
- (라)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자
- (마)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인 자

나.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신고관련 사항

(1)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

- (가) 신고의무자 : 가입대상 외국인이 종사하는 국민연금적용사업장의 사용자
- (나) 제출서류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1부
※ 외국국적동포는 법률상으로는 외국인이므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나,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할 경우 외국인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 신고증으로 확인 가능

(2) 외국인 사업장가입자관련 기타신고사항

- (가) 내국인 사업장가입자 업무처리기준을 준용하여 처리

| 외국 연금제도 조사 내용 (2012.1.1. 현재 129개국) |

구 분	국 가
사업장·지역 당연적용국 (66개국)	가이아나, 까보베르데,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도미니카, 독일, 덴마크,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비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모로코, 모리셔스, 몰도바공화국, 몰타, 미국, 바베이도스, 바하마, 버뮤다, 벨기에, 불가리아, 브라질, 세르비아,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아제르바이잔,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자메이카, 중국, 체코, 캐나다,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탄자니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파나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 헝가리, 호주, 홍콩
사업장 당연 적용, 지역 적용제외국 (43개국)	가나, 가봉, 그레나다, 나이지리아, 대만, 라오스, 레바논, 말레이시아, 멕시코, 몽골, 바누아투, 부탄,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수단, 스리랑카, 시에라리온, 아이티, 알제리,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예멘, 요르단, 우간다, 인도, 인도네시아, 짐바브웨, 칠레, 카메룬, 카자흐스탄, 케냐,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콩고, 콜롬비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터키, 토고, 파라과이, 페루
사업장·지역 적용제외국 (20개국)	그루지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동티모르,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로루시,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와질랜드, 아르메니아, 이디오피아, 이란(사회보장협정에 의함), 이집트, 캄보디아, 통가, 파키스탄, 피지

※ 해당국가의 연금제도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음

2. 사회보장협정 관련사항

가. 체결목적

- (1) 협정 당사국의 연금제도간에 서로 다른 점을 상호 조정하여 양 당사국 국민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함
 - (가) 단기파견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이중납부 문제 해소(보험료 면제, 이중가입 배제)
 - (나) 외국 연금제도에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양국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가입기간 합산)
 - (다) 협정상대국 국민에 대해서는 연금 수급권 취득, 급여지급 등 법령 적용에 있어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도록 함 (동등 대우)

나. 사회보장협정 형태 및 협정체결 국가

- (1) 사회보장협정은 대부분 양 당사국의 정부 간에 체결되고 있으며, 그 형태는 협정의 적용범위에 따라 “가입기간 합산 협정(보험료면제 포함)”과 “보험료면제 협정”으로 구분
 (2) 가입기간 합산 협정(보험료면제 포함)국에는 반환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나(아일랜드, 덴마크 제외), 보험료면제 협정국에는 반환일시금지급이 불가능합니다.

※ 협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공단 홈페이지 www.nps.co.kr [연금정보]-[사회보장협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국 가	협정발효일	파견근로자 적용원칙 (면제기간)	협정형태
협 정 발 효 (24 개국)	이 란	1978. 06. 01.	기간제한 없음	•보험료 면제협정
	캐나다	1999. 05. 01.	5년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영 국	2000. 08. 01.	5년	•보험료 면제협정
	미 국	2001. 04. 01.	5년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독 일	2003. 01. 01.	5년(합의시 3년연장가능)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중 국	2003. 02. 28.	파견기간제한 없음	•보험료 면제협정(잠정조치)
	네덜란드	2003. 10. 01.	5년	•보험료 면제협정
	일 본	2005. 04. 01.	5년(합의시 3년연장가능)	•보험료 면제협정
	이탈리아	2005. 04. 01.	3년(합의시 3년연장가능)	•보험료 면제협정
	우즈베키스탄	2006. 05. 01.	5년	•보험료 면제협정(E-8, E-9는 가입증명 제출없이 면제함)
	몽 골	2007. 03. 01.	5년(합의시 3년연장가능)	•보험료 면제협정
	헝가리	2007. 03. 01.	3년(합의시 3년연장가능)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프랑스	2007. 06. 01.	3년(합의시 3년연장가능)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호 주	2008. 10. 01.	5년(합의시 연장가능)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체 코	2008. 11. 01.	5년(합의시 3년연장가능)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아일랜드	2009. 01. 01.	5년(합의시 연장가능)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벨기에	2009. 07. 01.	5년(합의시 2년연장가능)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폴란드	2010. 03. 01.	5년(합의시 추가 3년 연장가능)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슬로바키아	2010. 03. 01.	5년(연장가능)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불가리아	2010. 03. 01.	3년(합의시 2년 연장가능)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루마니아	2010. 07. 01.	3년(합의시 2년 연장가능)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오스트리아	2010. 10. 01.	5년(합의시 3년 연장가능)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덴마크	2011. 09. 01.	5년(합의시 연장가능)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반환일시금 지급불가
	인도	2011. 11. 01.	5년(합의시 연장가능)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다. 이중가입 배제(보험료 면제) 요청

(1) 보험료 면제 절차



(2)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 신청

(가) 신청대상자

- 국내에서 협정상대국으로 일정기간(캐나다 · 영국 · 미국 · 독일 · 네덜란드 · 일본 · 우즈베키스탄 · 아일랜드 · 벨기에 · 슬로바키아 · 폴란드 · 오스트리아 · 몽골 · 체코 · 호주 · 덴마크 · 인도는 5년, 이탈리아 · 헝가리 · 프랑스 · 불가리아 · 루마니아는 3년)동안 파견된 근로자
 - 국내에서 협정상대국으로의 파견이 일정기간 연장된 자(미국 · 헝가리 · 프랑스 · 독일 · 일본 · 이탈리아는 3년, 불가리아 · 루마니아는 2년, 기타 국가는 연장기간이 별도 지정되지 않음)

※미국, 몽골, 이탈리아를 제외한 국가는 연장시 별도 합의절차 필요

- (나) 기타 협정의 규정에 따라 상대국 보험료 납부면제가 가능한 국내 사업장에 고용된 협정상대국 국민, 선원, 항공승무원 등

- (다) 신청서 제출기관 :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또는지사

※ 공단 국제협력센터(전화 02-2176-8705~10, 팩스 02-3485-9804)

(라) 제출서류

- 국민연금 가입증명 발급 신청서 1부
- 파견근무 명령서 등 파견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3) 협정상대국 가입증명서 제출 또는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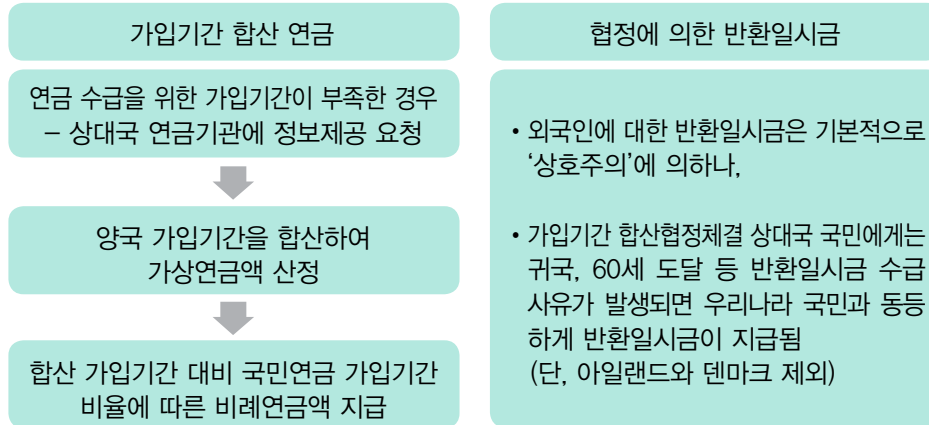
- (가) 신청서 제출기관 :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또는지사

(나) 제출서류

- 협정상대국 가입증명서(협정합의서식) 원본(사본 불가) 1부
- 해당 사업장 면제요청공문(임의양식)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라. 반환일시금 및 가입기간 합산 요청

(1) 가입기간 합산 절차



(2) 외국인에 대한 반환일시금

(가) 대상

-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주는 경우
- 가입기간 합산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 체류자격이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인 경우

(나) 제출서류

- 급여지급청구서, 신분증(여권, 외국인등록증), 예금계좌
- 해외송금 신청서 해외송금신청서 추가

(3) 반환일시금지급대상 국가 : 44개국

(2012. 1월 기준)

국적에 상관없이 지급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대상국 (13개국)	상응성 인정에 의한 대상국 (31개국)			
		최소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1개국)	최소 가입기간 1년이상 (10개국)	최소 가입기간 2년이상 (1개국)	최소가입기간 관계없이 인정 (19개국)
E-8, E-9, H-2	독일, 미국, 체코, 캐나다, 프랑스, 헝가리, 호주, 벨기에, 폴란드,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벨리즈	그레나다, 바베이도스, 세인트빈센트 그라나딘, 요르단, 짐바브웨, 카메룬, 콩고, 태국, 토고, 부탄	베네수엘라	가나, 말레이시아, 바누아투, 버뮤다, 수단, 스리랑카, 스위스, 우간다, 엘살바도르,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케냐, 콜롬비아, 터키, 튀니지, 트리니다드토바고, 필리핀, 홍콩

제4절 | 징수관리

1. 의의

「국민연금법」상 각종 연금급여의 지급 등 국민연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가입기간 동안의 가입자의 소득에 비례하여 일정 비율의 연금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을 말함. 2011년 1월 1일부터 사회보험 징수통합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함

2. 연금보험료

가. 정 의

가입자 자격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율”에 의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함

$$\text{연금보험료} = \text{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times \text{연금보험료율}$$

| 연도별 연금보험료 부담수준 |

(단위: %)

구 분		'88~'92	'93~'97	'98~'99.3	'99.4월 이후
사업장 가입자	계	3.0	6.0	9.0	9.0
	근로자	1.5	2.0	3.0	4.5
	사용자	1.5	2.0	3.0	4.5
	퇴직금전환금	—	2.0	3.0	—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		3.0	6.0	9.0	9.0

♣ 퇴직금전환금이란?

가입자 및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준비금에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93. 1개월부터 '99. 3월까지 납부한 금액, 이미 납부한 퇴직금전환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며 퇴직금전환금으로 납부한 금액을 가입자 퇴직 시 지급할 퇴직금에서 공제

나.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text{연금보험료} = \text{기여금} + \text{부담금}$$

(1) 기여금 : 사업장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4.5%)

(2) 부담금 : 사업장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4.5%)

※ 10월 미만 절사함

3. 연금보험료의 납부절차 등

가. 공단의 납입고지

(1) 납입고지 일정



(2) 매월 자격변동사항을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가) 매월 15일까지 신고분은 당월분 고지에 반영하고, 16일~말일 신고분은 익월분 고지에 합산

(3) 자격변동자료 마감 후 연금보험료를 산출하여 납입고지서로 각 사업장에 발송·고지함 (말일까지 고지서가 도착하지 않은 경우 재발급 요청)

$$\text{당월분 고지금액} = \text{당월분 연금보험료} + \text{소급분 금액}$$

※ 소급분 금액 : 전월이전의 자격 변동자를 당월에 신고함으로써 소급하여 발생하는 연금 보험료

(가) 소급취득 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당월고지 시 합산 (+)

(나) 소급상실 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해당월로 차감 (-)

나. 기여금의 원천공제

(1)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을 매월의 임금에서 원천 공제함

(가) 사업장가입자가 자격 취득월의 다음달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함. 다만 자격취득일이 초일이거나 취득월 납부를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당월분부터 납부가능함

※ 다른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서 자격을 상실하면서 현 사업장의 취득월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취득월 납부를 희망하더라도 납부 불가함

- (나) 국민연금 분리적용사업장간에 월중 전보로 인한 전출·입 가입자는 전출사업장에서 공제·납부(전입사업장에서 급여전액을 지급하더라도 연금보험료는 전출사업장을 통하여 납부해야 함)
- (다) 사업장이 통·폐합 또는 분리 적용된 월은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는(통폐합 또는 분리전출) 사업장에서 납부

| 원천공제 사례 |

구 분	사유발생 (월)	공제	
		원칙	취득월 희망/초일
연령도달	18세 도달 월	×	○
	60세 도달하는 월	○	—
1개월 이상 일용근로자	고용하는 월	×	○
신규채용월		×	○
자격상실	채용 당월 상실	×	○
	퇴사월	○	—
납부예외	휴직월	×	—
납부재개	복직월	×	○

다. 연금보험료의 납부

- (1) 사업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및 사업장 사용자 본인이 부담하는 부담금을 합산하여 납부
- (2) 납부기한 : 해당월의 다음달 10일 (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납부가능. 단, 토요일은 그 다음 날의 다음 날까지 가능)
- (3) 납기 내 납부
 - (가)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함

4. 연금보험료 미납 시

가. 연체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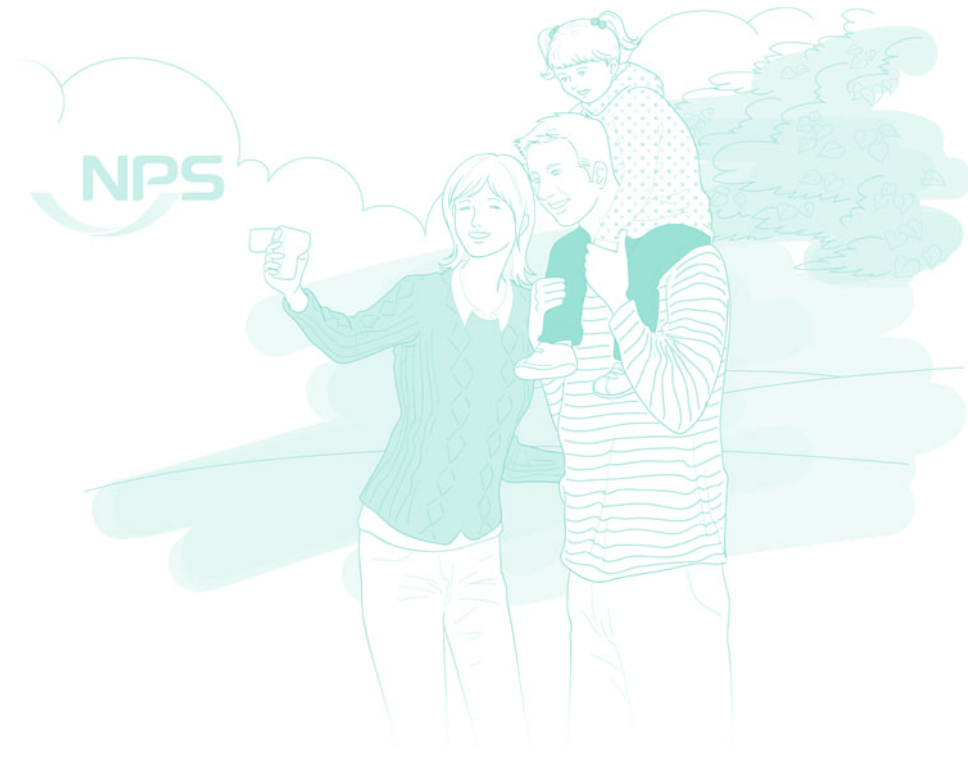
- (1) 납부기한 내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체금이 가산된 “납기후 금액”을 납부해야 함
- (2) 연금보험료는 매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는 연체금이 최고 9%까지 가산됨
 - (가) 납부기한일 미납 시 최초부과 연체료율은 미납보험료의 3%, 이후 1개월 단위로 1%씩 추가가산 최고 9%적용

나. 독촉 및 체납처분

- (1)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하고(국민연금법 제95조제1항),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국민연금법 제95조제4항)
- (2) 사업장의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체납사실을 통지함

5. 과오납금 반환청구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 등의 징수에서 발생한 과오납금이 있는 경우 체납처분비, 부당이득환수금과 가산이자, 미납 연금보험료의 연체금 및 보험료, 향후 납부해야 할 1개월분의 연금보험료(과오납금의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을 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함)의 순서로 충당하고 잔여금이 있을 때에는 건강보험공단에 반환청구 할 수 있음



제5절 |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1.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가. 대상보험 : 「국민연금, 고용보험」

- (1) 가입률이 낮고 他 보험보다 상대적으로 사각지대가 더 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우선 지원
- (2) 제도 수용성이 높은 건강보험과 재해 발생 시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보상되는 산재보험은 제외

나. 지원기준

국민연금·고용보험 사업장가입자 중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평균보수가 고시임금*의 하한액 이상 상한액 미만인 근로자

* 고시임금 : 근로자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1) 사업장 기준

- (가)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 각 보험에서 사업장 및 근로자 요건 모두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한 보험에서만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보험만 지원

◎ 근로자 10명 미만 판단 기준

- (공통적용)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 사업장 적용일이 전년도말 이전인 사업장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 근로자 수 10명 미만
 - ※ 사업장 적용일이 당해연도 이전으로 소급된 신규사업장도 동일 기준 적용
- 사업장적용일이 당해연도인 신규 사업장
 - 당연적용성립신고 당시 10명 이상이거나 사업장적용일이 당해연도 내에서 소급된 신규사업장인 경우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 근로자 수 10명 미만
 - 사업장 적용일이 속한 달 ~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전달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장으로 적용된 달 ~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 연속 10명 미만

- 규모 판단 기준일 :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법인은 법인단위,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 단위로 판단
 - 분리적용 사업장(본점 및 지점으로 분리된 경우)도 동일하게 법인은 법인단위,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 단위로 판단
 - (예외적용)아파트관리사무소는 관리사무소 현장별로 판단

◎ 아파트관리사무소 판단 관련근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사업주가 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 근로자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 다만,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한다.

- (건설현장사업장) 본점이 10명 미만이고, 건설현장사업장 단위별 10명 미만으로 요건 동시 충족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

본점(타지점포함)(A)	건설현장(B)	지원여부
10명 미만	10명 미만	A,B 모두 지원
10명 미만	10명 이상	A만 지원 (본점은 건설현장의 10명 이상 여부와 상관없음)
10명 이상	10명 미만	A,B 모두 미지원 (건설현장은 본점이 10명 이상이면 지원비대상)

- 기타 판단 기준
 - 외국인 : 보험료지원대상에서 제외

* 타 복지제도(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복지제도, 보육료 지원 등)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형평성 고려

(가) 지원제외기준

- 사용자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할 경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정부기관과 지자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11. 12. 30. 기준)
 - 한국은행, 공기업, 지방공사 및공단, 정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보조기관, 재출자·재출연 기관, 업무위탁 기관 등 233개소(매년 행안부 고시)

- 연중 3개월 연속으로 10명 이상인 경우
 - 지원 대상 사업장으로 결정된 이후 가입자 수가 연중 3개월 연속으로 10명

이상*이면 4개월째 분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10명 이상 여부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해당연도 말까지 재지원 불가

• 연도별 지원대상 판단 기준

- 매년 12월말 기준 “보험료지원 중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익년도 지원여부를 판단 후 직권 제외 또는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
- 매년 12월말 기준 당해연도 월평균 가입자수가 10명 이상이면 다음 연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공단 직권 처리)
- 매년 12월말 기준 당해연도 월평균 가입자수가 10명 미만이면 재신청 절차 없이 다음 연도 계속 지원

• 지원받던 중 지원대상자수 “0”인 사업장의 지원 여부

- (예)신청당시에는 지원대상자가 있었으나, 상실 등으로 미존재 사업장 등)
- 당해연도 말까지 신청이력 유지 후 다음 연도는 지원대상에서 직권 제외
 - 익년도 지원대상발생시 사업장에서 재신청 절차

(2) 근로자 소득기준

- (가) 기준소득월액이 상한선 미만인 근로자, 다만, 하한선을 고시하여 그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 제외

◎ 지원대상 소득기준의 상한선 및 하한선

상한선 : '12년의 경우 125만원

하한선 : '12년의 경우 35만원

- (보험료지원 소득기준 상·하한액 적용기간) 국민연금·고용보험 각각의 소득 적용기간(보험료 부과체계)을 고려하여 적용

구 분	국민연금	고용보험
전년도 보험료지원 소득기준 (상·하한액) 적용	당해연도 정기결정 전월까지 (1월~6월)	당해연도 보수정산 전월까지 (1월~3월)
당해연도 보험료지원 소득기준 (상·하한액) 적용	당해연도 정기결정 이후 (7월~12월)	당해연도 보수정산 이후 (4월~12월)

- (예외적용) 시범사업 기간 중 보험료지원 소득기준은 국민들의 혼란 및 운영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본사업 기준과 동일하게 운영

구 분	시범사업	본사업
적용기간	'12. 2월~6월	'12. 7월~'12. 12월
보험료지원 소득기준	35만원 이상~125만원 미만	

2. 지원금액 및 방법

가. 근로자 기준소득월액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기준소득월액	지원 수준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1/3 지원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1/2 지원

* 국민연금 :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 각 4.5%

* 고용보험 : 사업주 0.8%(고안·직능사업 0.25%, 실업급여 0.55%), 근로자 0.55%(실업급여)

나. 원단위 금액은 절사 후 지원금액 산정

◎ 보험료 지원금액 산정 예시

- 기준소득월액 999,000원(연금보험료 89,900원)
 - 사용자부담금 : 999,000원 X 4.5% = 44,950원
 - 근로자기여금 : 999,000원 X 4.5% = 44,950원
- 보험료지원금액 : 44,950원 / 2 = 22,470원(원단위 절사) X 2 = 44,940원
- 실납부보험료 : 89,900원 - 44,940원 = 44,960원
 - 사용자부담금 : 44,950원 - 22,470원 = 22,480원
 - 근로자기여금 : 44,950원 - 22,470원 = 22,480원

다. 지원방법

- (1) (공통적용) 신청월분(해당월분) 보험료를 납기내 완납시 익월 보험료에서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을 납부고지
 - (가) 신청월분(해당월분)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까지 완납 시 익월 보험료에서 신청월분(해당월분) 지원금을 차감하여 고지하는 방식으로 지원
 - (나) (보험료 완납 여부는 사업장 단위로 판단)
 - (다) 보험료 고지서에 보험료 지원금을 “보험료지원금”으로 명시
 - (라) 자격을 늦게 신고한 경우 소급 지원하지 않고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 (마) 사업장 자체에 향후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미지원*

* 월별보험료 완납 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되므로 폐업 등으로 사업장에 향후 부과될 보험료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미지원

3. 지원 및 제외절차

가. 신청서 접수

- (1)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보험료 지원
 - (가) 근로자의 별도 신청절차 없이 지원요건에 해당되면 보험료 지원
 - (나)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 제보 허용 → 근로자 제보 시 확인 절차를 통해 가입 조치 후 지원 대상 여부 확인
- (2) 신규가입자의 경우 지원 당시 보수는 지원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보수가 변경되어 다음 연도의 기준소득월액이 고시소득상한액의 110%(’12년도 기준 137.5만원)을 초과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개별 보험료지원 제외 신청 가능

◎ 신청서 접수 및 신청서식

- 기존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서식 신설, 공통서식) 작성·제출
- 신규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개정서식)에 신청 여부를 기재하여 제출
 - *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중 한곳에 신청 가능
 - (전자신청: <http://www.4insure.or.kr>)
 - * 당월 초일~ 말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나, 국민연금의 당월분 보험료 산정을 위한 자격 마감일이 당월 15일 경이므로, 되도록 해당일까지 최초 보험료 지원 신청

나. 보험료 지원대상 결정·통보

- (1) 전산자료를 기초로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
 - * 가입누락, 소득축소 신고 등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된 것이 사후에 발견되는 경우 제외 요건 해당 시 지원된 보험료가 환수될 수 있음
- (2) 각 공단에서 매월 자격마감일(15일경)까지 접수된 지원신청서에 대해 보험료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장에 통보
 - (가) 월보험료 자료 구축 이후(매월 20일경) 사업주 지원금과 근로자 지원금 내역을 사업장에 통지
 - (나) 근로자용 통지서를 함께 동봉하여 사업주가 지원대상자에게 근로자용 통지서를 배부토록 안내
 - * 관할지사에서는 반송된 사업장에 대해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재발송

다. 보험료지원 제외 신청

- (1) 신규가입자 중 취득 신고 당시 신고소득은 적정하였으나, 추후 성과금 수령 및 급여 상향 등으로 익년도 정기결정시 고시 소득 상한액의 110%가 초과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지원금이 전액 환수될 가능성 큼

(2) 이에 개별 지원제외신청이 가능토록 하여 환수 등 민원소지 예방

- (가) “보수변동월”(익년도 정기결정시 고시소득상한액의 110% 초과사유 발생월)의 익월분부터 지원제외
- (나) 신청방법 : 보험료지원제외신청서 제출(유선접수 불가)
- 연간 추정 월평균보수액 및 보수변동월 기재시 월급여가 불규칙한 경우 제외신청일이 속한 월의 전월까지의 당해연도 급여를 확인하여 추정 월평균보수액을 계산
 - 급여명세서(임금대장 등) 확인을 통하여 보수변동월(초과사유발생월) 익월 ~ 지원제외신청이전까지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 환수

◎ 보험료지원제외신청서

보험료지원 제외 사유

- ② 보험료 지원 제외 근로자(당해연도 신규 입사한 근로자 중 보험료 지원 대상자의 보수가 상한선 고시임금의 110%를 초과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간 추정 월평균보수액	보수변동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 신규 입사일이 속한 당해연도에 한하여 지원제외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간 추정 월평균보수액은 해당연도의 추정값을 기재합니다.

※ 보수변동월은 상한선 고시임금의 110%를 초과하게 된 보수변동월을 기재합니다.

4. 부정수급 및 환수 등

가. 부정수급 및 환수

(1) 원천적으로 지원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전액 환수

* <예시> 고의로 근로자를 미가입시켜 10명 미만 요건 충족 후 보험료 지원받은 경우

(2) 지원당시 요건은 충족했으나, 변경이 발생한 경우

- (가) (사업장 규모)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 것이 사후 적발되는 경우 연속 10명 이상인 4개월째 보험료 지원금부터 환수
- (나) (근로자 보수 기준) 고의로 전년도 소득을 과소 또는 누락 신고한 것이 적발된 경우 : 지원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 ☞ 당해연도 신규입사자의 경우 : 사용자의 신고임금은 지원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다음연도 확정된 기준소득월액이 지원요건 상한선의 110%(‘12년의 경우 137.5

- 만원)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 단, 지원제외신청시에는 “보수변동월”(익년도 정기결정시 고시소득상한액의 110% 초과사유 발생월)의 익월분부터 지원제외 후 환수없음

나. 환수절차

- (1) 각 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료지원금 환수결정·고지·징수 수행
- (2) 납부의무자 : 보험료지원사업장 사용자
- (3) 고지 및 납부기한
 - (가) 환수대상자 결정: 매월 정기고지마감 익일(21일 경)
 - (나) 정기고지
 - 환수통지서 및 고지서 동봉 발송 : 매월 25일 경
 - 납부기한 : 환수결정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
 - (다) 독촉고지
 - 최초고지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2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고지
 - (라) 수시고지
 - 사업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사 수시 발송
- (4) 고지금액
 - (가) 환수 결정된 보험료지원금 전액 고지
 - (나) 보험료지원환수금에 대한 연체금 또는 가산이자 없음
 - 고지서 발송
 - (다) 일반우편발송
 - 가동중사업장 : 사업장으로 발송
 - 탈퇴사업장 : 사용자(책임대표자) 주소지로 발송
 - (라) 납부방법
 - OCR장표(창구수납), 전자납부(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CD/ATM)
 - * 공과금 - 사회보험(국민연금) - 전자납부번호
 - * 전자납부번호 인자형식 : “0000 - 0000 - 000 - 000”

제6절 | 제증명 발급 및 가입자 자격확인

1. 사업장 및 사업장가입자 가입증명 발급

가. 의의

해당 사업장 및 가입자(이었던 자)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내역이나 보험료납부내역 등에 관하여 확인 또는 알고 싶은 사항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

나. 청구자료 유형

청구자료	설 명	비고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증명	• 해당 사업장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연금보험료 납부 상황 등 표기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 해당 사업장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내역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명부	• 해당 사업장에 가입이력이 있는 자의 전체내역(취득, 상실)	
사업장국민연금 납부증명(연도별, 월별)	• 해당 사업장의 국민연금보험료 연도별, 월별 납부내역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사업장가입자)	• 해당 사업장가입자 개인별(전체, 특정 가입자)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퇴직금전환금 부과내역서	• 해당 사업장가입자의 퇴직금전환금 부과내역 - 적용시기 : 1993.1.1. 시행 / 1999.4.1. 폐지	
00년00월분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 해당 사업장의 당월분 연금보험료 결정 내역 - 자격변동에 따른 소급분 내역 등 표기	

다. 신청자격

사업장 사용자 또는 해당 사업장에 가입중인 자, 업무대행업체

라. 제출서류

- (1) 국민연금 제증명 발급신청서(사업장용) 1부
- (2) 신청구분별 구비서류 및 확인사항

(가) 가입중인 사업장

신청구분		구비서류	비 고
전화	사용자	•없음	•해당 사업장 여부 확인 •전화신청 가능한 증명서 : 지사 문의 •업무담당자는 해당 사업장의 사회보험 자격유지자에 한함
	업무담당자		
내방	사용자	•신분증 지참	•사용자 본인 여부 확인
	업무담당자	•신청서 또는 문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신청인 신분증 사본 첨부 •신청자(업무담당자)는 해당 사업장의 사회보험 자격유지자에 한함
	업무대행업체	•신청서 또는 문서 •사용자의 위임장	•신청인 신분증 사본 첨부 •위임장상에 국민연금 제증명 발급신청에 대한 위임사항, 위임자·피위임자 사항 기재
	대리인	•사용자 신분증 사본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팩스	사용자	•신청서 또는 문서	•공단에 신고된 사업장 팩스번호로만 송부 가능
	업무담당자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우편	사용자	•신청서 또는 문서 •사용자의 신분증 사본	•사용자 본인과 전화 확인

※ 인정 가능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만료전의 여권, 공무원증, 장애인 복지카드, 선원수첩, 외국인등록증

* 분리적용사업장의 경우에는 본점·지점 구분없이 동일한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제 증명서 발급

(나) 탈퇴 사업장

신청구분		구비서류	비 고
내방	사용자	•신청서 또는 문서 •신분증 지참	•최종 이전 사용자가 신청하는 경우 자신의 재임기간과 관련하여 제증명 발급만 가능
	사용자의 대리인	•신청서 또는 문서 •사용자의 위임장 •사용자의 신분증 사본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팩스	최종 사용자	•신청서 또는 문서 •신분증 사본	•신청서상 기재된 팩스번호로 송부
유선	최종 사용자		•전화신청 가능한 증명서 : 지사 문의
우편	최종 사용자	•신청서 또는 문서 •신분증 사본	•사용자 본인과 전화 확인

2. 가입자의 자격확인 청구

가. 의의

사용자의 신고기피 또는 신고누락으로부터 가입자(이었던 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약식 심사청구 제도로, 자격의 취득·상실 및 가입종별의 변동에 관하여 해당가입자(자격상실자 포함)가 직접 공단에 그 사실여부 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청요건

- (1) 청구자격 :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
- (2) 청구할 수 있는 사유(범위)
 - (가) 사용자의 취득신고누락, 취득일 잘못신고 등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 (나) 사용자의 상실신고누락, 상실일 잘못신고 등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
 - (다) 가입자 종별의 변동에 관한 사항
- (3) 제출서류
 - (가) 자격확인 청구서 1부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 (나) 청구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다. 제 출 처 :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

3. 자격변동확인통지서

가. 개 요

사용자가 당월 자격신고마감일(매월15일)까지 신고한 가입자의 자격취득·상실과 성명·기준소득월액 등의 내용변경 및 내역정정에 관한 자격변동사항에 대해 사업장 및 가입자(였던 자)에게 알리기 위함

나. 발송시기

매월 25일경

다. 주요내용

- (1) 취득/상실/납부예외·재개 : 가입자(였던 자)의 취득·상실 등을 표기
- (2) 소급분 월수 및 금액 : 전월 이전 자격변동자를 당월에 지연신고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급기간의 월수 및 금액(당월분 제외)

(가) 소급상실 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차감(-)

(나) 소급취득 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합산(+)

라. 사용자(담당자) 유의사항

- (1) 가입자의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거나 변경된 사항 등 공단의 통지사항을 해당 가입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사용자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제131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음
- (2) 자격변동통지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음

마. 사업장가입자 신고서 처리결과 즉시알림서비스 시스템

- (1) 개요 : 매일 발생하는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취득상실 등 자격변동사항을 처리익일 사업장 팩스로 처리결과 통지
- (2) 통지제외 사업장 : EDI가입 사업장, 탈퇴사업장, 수신거부사업장

4. 국민연금 가입내역안내

가. 개 요

사업장가입자에게 국민연금 가입이력, 보험료 납부내역 및 예상연금액 등을 매년 통지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연1회 발송

나. 주요 안내사항

국민연금 최초 가입 시부터 현재까지 납부·미납내역(사업장 및 지역 이력 포함)

다. 기타사항

- (1) 안내문은 가입자의 집주소(주민등록상)로 우편발송(E-mail 신청자 제외)
- (2) 실제거주지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송달지 지정을 통해 우편물을 수령 가능
- (3) 2012. 1. 1.부터 생일월에 안내문 발송(예 : 3월생은 3월, 5월생은 5월)
- (4) 가입내역안내 내용은 자료 구축시점으로 안내 되기 때문에 자격소급변경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5) 외국인가입자는 자국어로 안내(15개언어 74개국)

제7절 | 신고 편의제도

1. EDI 서비스

가. EDI 서비스란?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란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고용/산재)에 대한 공통 신고 및 국민연금 고유업무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고·신청하고, 국민연금 보험료 월별 결정내역 등의 각종 통지문서를 받아볼 수 있는 민원처리 서비스

나. EDI 서비스 이용 시 좋은 점은?

- (1) 시간·장소와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여 4대 기관 방문시간 절약
- (2) 별도의 신청 없이 매월·수시 국민연금의 각종 정보 및 데이터 수신 가능
- (3) 국민연금 제 증명서를 지사 방문 없이 EDI로 발급 가능(직인날인)
- (4) 완벽한 보안체제로 개인정보보호

다. EDI 서비스 내용

- (1) 4대 사회보험 공통신고 업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에 동시신고가 가능한 신고업무

사업장	•사업장 탈퇴(소멸)신고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장 내용변경신고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장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특수직종 여부, 취득일(국민/건강만 해당)변경 가능

(2) 국민연금 고유신고(청) 업무

국민연금만 신고·신청이 가능한 업무

연금고유신고(청)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 신고서 – 기준소득월액, 취득/상실일, 취득/상실취소, 취득/상실사유, 납부 재개예정일, 체류자격, 취득월납부여부, 상실월고지희망여부 등 •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납부재개 신고서 • 분리적용 사업장가입자 전입신고서 • 분리적용 사업장 등록/해지신청서 • 소득총액신고서(연간업무) • 소급분 분할납부신청서 • 소규모사업장 연금보험료 지원신청서
건설일용직신고	• 건설일용직 근로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 건설일용직 사업장 경정신청서
증명서신청	①가입자 가입증명 ②사업장 가입증명 ③사업장 연금보험료 납부증명 ④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사업장가입자) ⑤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개인별 국민연금보험료 부과내역 확인) ⑥자격변동확인통지서 ⑦사업장가입자 명부 ⑧연금보험료 결정금액 변동통지서

(3) 신고서 처리결과 안내 및 통지업무

EDI로 신고·신청한 자료의 처리결과 및 국민연금 통지업무

민원처리 현황	• EDI로 발송한 신고서 처리결과 조회 • EDI로 발송한 신고내역 조회
통지업무 통지업무	• 연금보험료 결정내역 통보서(1차) – 매월 17일경 ①당월분 결정내역, 전월분 수납내역 ②가입자내역 ③(예정)당월분 산출내역 ④소급분내역 • 연금보험료 결정내역 통보서(2차) – 매월 21일경 ⑤당월 취득자 중 취득월 미결정자 ⑥자격변동확인통지서 ⑦연금보험료 결정금액 변동통지서 ⑧연금보험료 지원대상자 ⑨(최종)당월분 결정내역 • 정기자료 확인대상자 ① 성명·주민등록번호확인대상자 ② 납부재개 예정자 ③ 납부재개 예정일 경과자 ④ 특수직종근로자 ⑤ 외국인사업장가입자 신고대상자 ⑥가입확인대상자 명부 • 건설일용직 사업장 경정내역서
연간	• 소득총액신고서 •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통지서 • 기준소득월액 확인·정정 대상자 명부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대상자 명부

라. EDI서비스 가입 및 이용방법

KT중계망을 통해 이용하는 사회보험 EDI서비스(이용자가 KT에 요금 납부)와 2012.1월부터 시작된 웹방식의 무료서비스인 국민연금 EDI서비스로 분류됩니다. 이용 가능한 민원 서비스는 같으나, 접근경로 및 요금부과부분이 상이합니다.

① 국민연금 EDI서비스 <http://edi.nps.or.kr>

EDI 회원 가입후 서비스 시작 ▶ 회원가입시 등록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신고·신청 업무 ▶ 신고·신청내역 결과 확인



회원가입 후 서비스 이용하기

- 국민연금 홈페이지(<http://www.nps.or.kr>) → 민원서비스 → 국민연금 EDI → 회원가입 → 서비스이용
- 국민연금 EDI 홈페이지 주소를 직접 입력하기 <http://edi.nps.or.kr> → 회원가입 → 서비스이용
- 별도의 이용요금 없음

회원가입시 공인인증서 등록 필수

- 개인사업장 →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인증서 및 개인사용자의 인증서 사용
- 법인사업장(시·군·구청 등 법인번호없는 법인포함) →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

| 국민연금 EDI서비스 (<http://edi.nps.or.kr>) 이용방법 |

가입자 취득신고	• 신고서작성 → 4대공통신고서 → 1.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해당 신고서 작성 → 신고서 발송
가입자 내용변경	• 신고서작성 → 연금고유신고서 → 1.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신고서 → 해당 신고서 작성 → 신고서 발송 • 신규 입사자에 대한 취득취소는 EDI로 처리불가. 지사에서 처리 • 지연신고 또는 증빙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가 증빙자료 확인 후 처리
증명서 발급	• 증명서신청 → 증명서 서식 선택 → 작성 후 신청서 발송 ①가입자가입증명 ②사업장가입증명 ③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④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⑤ 00년 00월분 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⑥자격변동확인통지서 ⑦사업장가입자명부 ⑧결정금액 변동통지서 ⑨퇴직금전환금 결정내역서 ⑩사용자부담금 납입확인서 ⑪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가입자 가입증명 ☞ 증명서에 따라 즉시 발급 또는 10여분 소요(대규모사업장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발급 후 24시간 이내에 출력가능 ☞ 송수신문서 → 증명서처리현황에서도 발급 확인이 가능
신고서 처리 소요시간	• EDI 신고에 따른 처리결과는 기관에서 처리 즉시 발송 • 4대공통신고서는 기관별 처리 소요시간이 각각 상이 • 송수신문서 → 민원처리현황에서 처리결과 확인 가능
통지문서 확인	• 송수신문서 → 연금통지문서에서 확인 ☞ 이전문서는 처리기간 변경 세팅 후 조회 • 연금보험료 결정내역, 정기자료확인대상자, 소득총액신고서 등 공단에서 사업장으로 보내는 문서 수신
연금보험료 결정 내역 1·2차 발송	• 1차(17일경) : 당월분 결정내역/전월분 수납내역, 가입자내역, (예정)당월분 산출내역, 소급분내역 → 가입자 보험료 공제관련 사항 • 2차(21일경) : 당월 취득자 중 취득월 미결정자, 자격변동확인통지서, 연금보험료 결정금액 변동통지서,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자, (최종)당월분 결정내역 → 국민연금 보험료 결정관련 사항
오류 반송 처리 조치방법	• 송수신문서 → 민원처리현황에서 처리상태가 '오류'인 건은 정상처리가 되지 않은 건으로 해당기관의 지사 담당자에게 확인, 국민연금신고서의 경우, 담당자 확인 후 '정상' 처리건에 대해 "처리+1일"에 처리 결과가 통보됨 ⇒ 연금통지문서 '타 신고방법에 의한 처리결과' • 처리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관할지사에 팩스로 보내거나 EDI에서 첨부파일로 발송하면 지사 담당자 확인 후 처리

② 사회보험 EDI서비스 http://bips.bizmeka.com/npc/npc_info/npc_edi_inf.htm

EDI 회원가입후 서비스 가입확인(ID 부여받기) ▶ EDI 프로그램 설치(부여받은 ID로 접속) ▶ EDI 환경설정 ▶ 보안인증서 설치 ▶ 신고 및 신청 업무 ▶ 신고 · 신청내역 결과 확인

※ 사회보험 EDI 가입요령은 국민연금홈페이지(<http://www.nps.or.kr>), 이용매뉴얼은 사회보험 EDI 포털(<http://bips.bizmeka.com>), 문의는 KT EDI콜센터 (080-318-5306)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

| 이용요금 |

사회보험가입 인원수별	월정액		
	국민연금 서비스만 이용하는 경우	건강보험 서비스만 이용하는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서비스 모두 이용하는 경우
5인 이하	무료	무료	무료
6~9인	1,000원	1,000원	950원
10~49인	2,500원	2,500원	4,750원
50~99인	3,700원	3,700원	7,030원
100~299인	3,800원	3,800원	7,220원
300~499인	4,000원	4,000원	7,600원
500인 이상	6,000원	6,000원	11,400원

- 국민연금 EDI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업장에서 송·수신한 문서를 처리하고 EDI시스템의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장에서 KT에 부담하는 요금을 말함
- 이용요금은 사업장에서 신고·신청업무를 공단으로 송신한 해당 월부터 정액제로 부과(부가세 별도)되며, 공단에서 제공하는 업무(안내문, 연금보험료 결정내역 등)를 수신만 하는 경우에는 무료 이용이 가능함
- 국민연금 EDI서비스 <http://edi.nps.or.kr>를 이용하시는 경우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요금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요금 적용일자 : 가입자 수는 매월 25일경(휴일이 아닌 경우) 기준

▶ 복수서비스란 국민연금, 건강보험EDI 동시 사용자일 경우 해당됩니다.

※ 장기이용사업장 할인

– 2년이상 이용사업장 : 1% 할인 / – 3년이상 이용사업장 : 2% 할인

※ 복수서비스 할인

– 복수서비스 : 5% 할인

| 사회보험 EDI 프로그램 설치하기 |



- ① 국민연금홈페이지(<http://www.nps.or.kr>) → 민원서비스 → 사회보험EDI → EDI자료실 → 54.사회보험EDI통합 설치프로그램 선택
- ② 파일명(siedisetaup.exe) 선택 → 저장 → 다운받을 경로 지정
- ③ 지정된 경로에서 다운로드된 siedisetaup.exe를 실행하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완료 후 바탕화면에 사회보험EDI 아이콘 생성

| 인증서 발급/재발급하기 |



- ① 사회보험 EDI서비스 접속(로그인)
 - ② 보안인증서관리 화면 → 인증서발급/재발급 클릭 → 인증서 패스워드 입력창에서 비밀번호를 입력
※ 문서 송·수신 시 사용하는 비밀번호
 - ③ 인증서 백업 창에서 이동식 디스크 삽입 후 예(Y)를 선택한 후 인증서 백업 성공이 표출되면 정상
※ USB 또는 이동식 디스켓 없을 경우 차후 백업 가능
- ☞ 사회보험 EDI서비스에서 사용중인 인증서는 은행 등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인인증서와는 다른 국가 정보원의 보안인증심사를 거쳐 자체 발급한 EDI 업무전용 인증서임

| 사회보험 (KT) EDI서비스 이용방법 |

가입자 내용변경 방법	• 신고서작성 → 연금신고서 → 5 사업장 및 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 신고서 작성(변경부호 확인) → 저장 송신 
증명서 발급	• EDI화면 우측상단의 제증명신청(연금) → 발급대상 클릭 → 저장송신 ① 가입자가입증명 ② 사업장가입증명 ③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④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⑤ 00년 00월분 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⑥ 자격변동확인통지서 ⑦ 사업장가입자명부 ⑧ 결정금액 변동통지서 ☞ 약 10여분 소요 (대규모 사업장은 약 1시간 소요) ☞ 수신함 → 연금고유문서에서 발급 확인
신고서 처리 소요시간	• EDI 신고에 따른 처리결과는 기관에서 처리 즉시 발송 • 4대공통신고서는 기관별 처리 소요시간이 각각 상이 • 수신함 → 4대공통받은문서(4대공통신고서) 연금받은문서(연금신고서)에서 처리결과 확인
수신문서 확인	• 신고서 처리결과 및 공단에서 통지하는 모든문서는 수신함에서 확인 ☞ 수신함 문서는 수신일로부터 7일 후 자동 삭제되며 미수신 시 60일 후 자동 삭제 • 수신함에서 조회한 문서는 받은 문서보관함에 저장(재조회 가능)
연금보험료 부과내역 1·2차 발송	• 1차(17일경) : 당월분 결정내역/전월분 수납내역, 가입자내역, (예정)당월분 산출내역, 소급분내역 → 가입자 보험료 공제관련 사항 • 2차(21일경) : 당월 취득자 중 취득월 미결정자, 자격변동확인통지서, 연금보험료 결정금액 변동통지서,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자, (최종)당월분 결정내역 → 국민연금보험료 결정관련 사항
기수신 문서 다시받기	• 신고서작성 → 연금신고서 → 2.전자문서 재송부 요청서 → 문서명, 재송부 사유 선택 → 문서등록 → 저장 및 송신 (30분 이내에 수신함 확인) • 결정내역의 경우 1년 이내 자료는 재송부 가능
오류 반송 처리 조치 방법	• 수신함에서 신고서 처리결과가 '오류'인 건은 정상처리가 되지 않은 건으로 해당 기관의 지사 담당자에게 확인, 국민연금 신고서의 경우, 담당자 확인 후 '정상' 처리건에 대해 "처리+1일"에 처리 결과가 통보됨 ⇒ 연금수신함 '타 신고방법에 의한 처리결과' • 처리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관할지사에 팩스로 보내거나 EDI에서 첨부파일로 발송하면 지사 담당자 확인 후 처리

2.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

가.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신고란?

4대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각종신고 및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접수 및 조회하고 처리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민원처리 서비스

나.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를 이용하면 편리한 점

- (1) 연중, 장소와 관계없는 지속적인 서비스
 - (가) 사무실 · 자택 · PC방 등 인터넷이 연결된 곳 어디서나 연중 무료로 사용 가능 (민원 신고 및 증명서 발급 서비스는 반드시 공인인증서 필요)
- (2) 처음 사용자 및 업무미숙자에 대한 도움말 및 신고 안내서비스
 - (가) 서식작성 시 어려운 용어 및 작성방법에 대한 용어사전 제공
 - (나) 문제발생시 사용자PC를 직접 연결하여 해결하는 고객지원서비스
- (3) 민원 접수결과와 즉시확인 및 처리결과 통보 서비스
 - (가) 처리결과에 대한 실시간 조회 및 SMS 통보 서비스 제공
- (4) 각 기관의 사이버 민원창구 단일 로그인 연계 서비스
 - (가) 한 번의 로그인으로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홈페이지 연계서비스(Single Sign On 연계기능)
 - (나) 주요 사이버민원의 연결서비스로 대부분의 4대 사회보험 민원신고(신청) 및 조회 가능
 - ※ 단,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 사이트에 회원가입이 되어야 이용 가능
- (5) 안전한 개인정보 및 민원접수 내역 보호
 - (가)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확인절차로 제3자에 대한 정보유출 방지
 - (나) 민원접수내역의 데이터베이스 관리로 필요 시 즉시 조회 및 출력가능

다.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 인터넷 서비스 내용

※ 해당 메뉴는 각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회원 서비스	사업장 회원		개인 회원			
전자 민원	사 업 장 업 무	사업장 성립 신고	사업장적용(해당)/보험관 계성립 신고	자격취득 신고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	
		사업장 탈퇴 신고	사업장탈퇴/보험관계 해지 신청		자격상실 신고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
		사업장 내역 변경 신고	사업장 내역변경/보험 관계 변경 신고	내용변경 신고 (연금)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내용변경 신고
		자동이체 신청	4대사회보험 사업장 자동이체 신청			자격변동 신고 (건강)
		보험료지원 신청/제외 신고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지원 신청/ 제외 신고	자동이체 신청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동 이체 신청/해지	
	가 입 자 업 무	자격취득 신고	사업장 가입자 및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	지 역 가 입 자 업 무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자격상실 신고	사업장 가입자 및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			
		내역변경 신고	사업장(직장)가입자내역 변경 신고			
		피부양자 취득/상실 신고	건강보험 사업장(직장)가 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건강보험 사업장(직장)가 입자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			
		보수월액 변 경 신청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보수월액 변경 신청			
		근로내용확 인 신고	[고용보험/산재보험] 근로 내용 확인 신고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근무처 변동 신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근무처/근무 내역 변동 신고 [고용보험/산재보험] 피보험자(근로자) 전근(전보) 신고				

회원 서비스	사업장 회원			개인 회원		
전자 민원	가 입 자 업 무	휴직 등 신고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납부재개 신고 [건강보험] 휴직자 등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해지)신청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자 휴직 등 신고	직 장 피 부 양 자 업 무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대량민원 접수	사업장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 부양자 취득 신고 사업장 가입자 자격상실 신고			
	민원처리현황 조회		‘포털’ 및 ‘창구/EDI’로 접수한 민원신고의 처리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 (접수중 및 서식 출력 가능)			
증명서 발급	증명서 발급신청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신청			
	증명서 신청현황 조회/발급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신청현황 조회 및 발급			
	증명서 진위여부 확인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진위여부 확인			
원격 지원	포털사이트 이용 중 장애 발생 시, 포털사이트 관리자가 사용자 PC에 접속하여 장애 요인 등 처리					
기관 연계 서비스	건 강 보 험	신청/ 통보/ 납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인터넷 지로 납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보수 총액통보서 신고	재발급 신청	건강보험 재발급 신청	
		조회	사회보험료 고지/납부 현 황 조회 사회보험료 산출내역 조회 건강보험료 사업장 가입자 별 고지내역 조회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산출 내역 조회 사업장 직원 조회	자격 및 보험료 조회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 지역보험료 부과 내역 지역보험료 고지/납부내역 보험료 자동이체 지역보험료 조정신청 보험료 미납내역 보험료 고지서 재발급 보험료 납부 확인서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회원 서비스	사업장 회원			개인 회원		
기관 연계 서비스	건강 보 험	증명서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 통보서 발급 연간 사회보험료 납부증명서 발급	보험급여 및 진료 내역	진료내역 조회 본인부담 환급금 신청 본인부담 보상금 신청 본인부담액 상한액 사업장 의료비 자료제공	
				건강검진 조회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건강검진 결과 조회	
	고 용 보 험	조회/ 자료 요청	고용보험 가입자 조회 근로자별 고용보험 가입여부 조회 고용보험 가입자 자료 요청 지급내역 조회 전자통지서 수신현황 조회 하수급인 등록현황 조회 일용근로내역 신고현황 조회	개인 신고시	육아 휴직급여 신청 실업인정신청 산전 후 휴가 급여 신청 수급기간 연장(연장변경)신고서 개별연장 급여 신청	
				개인 피보험자 이력 조회시	피보험자 이력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고용보험 가입여부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내역 전자통지서 수신현황 피보험자 자격 신고 현황 급여 수급지급내역	
	산 재 보 험	신고/ 신청/ 증명원 발급	건설공사 별목업 보험관계 성립 신고 보험료 신고 보수총액 신고 임채부담금경감 신청 일괄적용 사업개시 신고 보험가입 증명원 발급 보험료완납 증명원 발급	내 연 금 행 복 나 래	조 회	예상연금 조회 희망연금 조회 장애유족예상연금 조회 예상연금 모의 계산

라. 포털사이트 가입 및 이용방법

(1) 포털사이트 회원 가입하기

- ①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접속
 - 사이트 접속시, 보안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설치되며, 자동 설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참여 마당>이용자도우미>보안서비스>프로그램 다운로드]를 참고하여 설치함
 - 한글주소 [4대사회보험] 또는 [4대보험]을 주소창에 입력하여도 접속 가능
- ② 회원가입 : [사업장 회원] 또는 [개인 회원] 선택
 - [실명 확인]시 [사업장 회원]은 해당 [사업장관리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함
단, 4대사회보험에 사업장 성립신고가 되지 않은 사업장은 별도의 선택 절차 제외
※ 사업장이 설립된 지 3일 이내인 사업장은 회원가입이 한시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음
- ③ 공인인증서 등록
 - 인증서 등록 이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선택할 경우 [아이디/비밀번호] 입력 없이 로그인이 가능함
 - 본인 확인이 필요한 [전자민원, 증명서 발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침

(2) 포털사이트에 [로그인] 하기

◎ [공인인증서 로그인] 또는 [아이디/비밀번호] 로그인 하기

-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반드시 회원가입 시 등록한 [공인인증서]만으로 로그인이 가능함
 - ※ 공인인증서
[사업장 회원]
 - 법인사업장 :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인증서
 - 개인사업장 :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인증서 또는 [대표자 개인인증서]
 - [개인 회원]
 - 본인의 주민(외국인)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개인인증서

[공인 인증서 발급]은?
기존에 발급된 개인 또는 사업장의 인터넷뱅킹용, 전자입찰용, 보건복지분야용 등의 공인인증서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인증서가 없는 경우 [거래 은행]이나 [국민연금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근지사]로 방문하여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에서는 별도의 인증서를 발행하지 않음
- ▶ [아이디/비밀번호] 로그인
 - ※ 아이디·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 아이디 조회 :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또는 공인인증서로 확인
 - 비밀번호 재등록 : [공인인증서]로 비밀번호 재등록

(3) 신고·신청내역 처리결과 확인하기

① 로그인 후

- 초기화면 [민원처리현황 조회] 또는 [전자민원 > 민원처리현황 조회]를 클릭하면 조회일로 부터 최대 12개월 이전에 [포털사이트] 및 [지사 창구(팩스, EDI 신고 포함)]에서 신고한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 조회기간 : 기간 설정 또는 오늘, 1주일,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② [처리여부] 항목 확인

- [처리완료]인 경우 : 정상적으로 처리가 끝난 상태
- [미전송건]인 경우 : 신고서 작성(저장) 후 처리기관으로 [전송]되지 않은 상태
 - ☞ 해당 신고서 [상세보기]를 클릭하여 입력내용 확인 후, 반드시 [전송]버튼을 클릭하여 처리기관으로 전송하여야 합니다.
- [처리오류] 또는 [일부오류]인 경우 : [민원처리현황조회]메뉴에서 해당 신고서 [상세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처리상태/오류메세지]항목에 간략한 처리오류 사유를 확인할 수 있음
 - ☞ 더 상세한 처리오류 내용 확인은 [민원처리현황 조회]화면에서 해당 신고서의 [처리자 및 지사 전화번호]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SMS 서비스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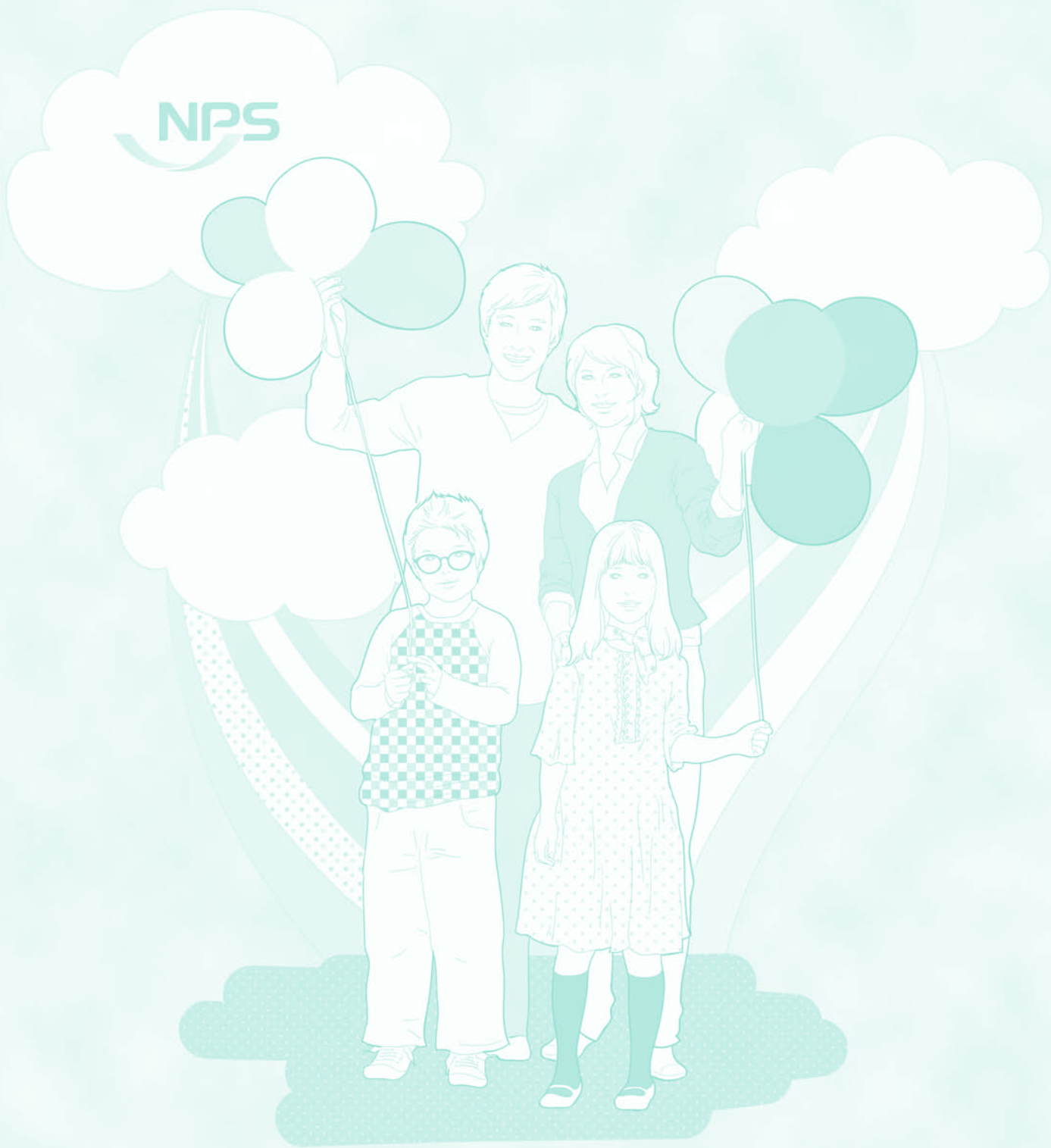
- 전자민원 신청 시 입력한 휴대폰 번호로 [전자민원처리 현황] 발송

마. 문의전화

문의 내용	기관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 접속 및 운영관련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02-2240-1155	www.4insure.or.kr
국민연금 업무관련	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	www.nps.or.kr
건강보험 업무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www.nhic.or.kr
고용보험 피보험자 업무관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국번 없이 1350	www.ei.go.kr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및 산재보험 가입자 업무관련	근로복지공단	1588-0075	total.kcomwel.or.kr
4대 보험료 고지금액 및 납부금액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si4n.nhic.or.kr

※ 포털사이트 이용 중 오류 또는 비정상적인 동작이 발생할 경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로 문의하며, 민원신고서 작성 중 입력내용 및 민원처리기준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세부적인 업무안내 필요)

NPS



제2장

국민연금 혜택

제1절 급여의 종류

제2절 연금급여액

제3절 수급기간 및 수급방법

제4절 둘 이상(연금) 급여가 발생한 경우

제1절 | 급여의 종류

1. 개 요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중신보험 성격의 사회보험으로서, 급여의 종류로는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 급여의 종류 |

연금 급여(매월 지급)	
노령연금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
장애연금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
유족연금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여
일시금 급여	
반환 일시금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사망 일시금	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비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2. 연금급여의 특징

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므로 안전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의 책임아래 운영되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연금지급이 확실히 보장됩니다. 전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공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160여개국에 달하지만 연금지급을 중단한 예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나. 물가가 올라도 항상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해 줍니다.

처음 받는 연금액을 결정할 때는 본인 과거 평균소득을 연금 지급 현재의 가치로 재평가하여 반영하고, 이후 연금을 받는 동안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함으로써 물가가 인상되더라도 항상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합니다.

※ 2012년에는 4% 인상조정

다. 지급된 급여를 다시 한번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지급된 연금급여로서 월15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여 연금을 통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합니다.

3. 국민연금 수급자

1988년 1월 연금제도가 처음 실시된 이후 1993년 1월 특례노령연금 지급을 시작으로 2010년 9월에는 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3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누적기준).

| 연금수급자 현황 |

(2012년 10월말 현재, 단위 : 명)

구 분	총 계	노령연금				장애 연금	유족 연금
		소계	노령	특례	조기/분할		
수급자	3,251,368	2,697,585	780,307	1,605,589	611,689	75,003	478,780

4. 노령연금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포함), 조기노령연금으로 구분되며, 파생급여로 분할연금이 있습니다.

|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 |

구 분	요 건
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 60세에 도달한 자 ※ 노령연금수급권자가 65세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연령별로 일정 비율의 연금액 감액하여 지급하되, 근로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공제 후의 월평균 소득액이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없음
조기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령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 하고, 60세 도달 전에 청구한 경우(60세 전에 소득 있는 업무종사 시 그 기간의 연금을 지급정지하고, 60세 이후 65세 전에는 연령에 따라 50%~90% 지급)
분할연금	• 가입기간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60세가 된 경우

가. 노령연금, 반환일시금 등 연금 수급개시 연령 연장

- (1) 노령연금, 반환일시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현재 60세(조기노령연금은 55세)이나 1953년 출생자부터는 단계적으로 1세씩 연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조기노령연금은 60세)가 됩니다.
- (2) 오래전부터 노령화가 시작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스웨덴 등 많은 선진국들은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 상향조정 개혁을 1980년대부터 단행하여 현재 65세 또는 그 이상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노령화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사회에서 연금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것입니다.

| 노령연금 등 출생년도별 수급개시 연령 |

노령연금, 분할연금, 반환일시금 등		조기노령연금	
		2013년 1월 이후	
~'52년생	60세 부터	~'52년생	55세 부터
'53~'56년생	61세 부터	'53~'56년생	56세 부터
'57~'60년생	62세 부터	'57~'60년생	57세 부터
'61~'64년생	63세 부터	'61~'64년생	58세 부터
'65~'68년생	64세 부터	'65~'68년생	59세 부터
'69년생~	65세 부터	'69년생~	60세 부터

5. 장애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완치된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급여를 지급합니다.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가. 장애등급 결정

- (1) 완치일을 기준으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정도에 따라 1급~4급으로 결정하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 (2) 만약, 1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장애가 경미하여 장애등급(1급~4급)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60세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다만,

‘53년~’56년생은 61세, ‘57년~’60년생은 62세, ‘61년~’64년생은 63세, ‘65년~’68년생은 64세, ‘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까지 청구하면 됨)

※ "완치"란 부상 또는 질병이 의학적으로 치유되었을 때 또는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증상이 안정되고 장기간에 걸쳐서 그 장애의 고정성이 인정되는 최종 상태를 말함

6.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을 지급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 받을 수 있는 요건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단,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함)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기간 10년 이상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기간 10년 미만의 가입자였던 자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가입 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가. 유족의 범위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배우자,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지급대상	요 건	
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연령제한 없음)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	
손자녀	19세 미만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	

7. 반환일시금

- (1) 60세가 되었을 때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국외이주 등으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에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2)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가입기간이 소멸되므로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시 국민연금가입자가 된 경우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반납함으로써 가입기간이 복원될 수 있습니다.

◎ 받을 수 있는 요건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경우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경우
- 1999. 4. 1.전의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8. 사망일시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에게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지급함.

제2절 | 연금급여액

1. 연금급여액 구성

- (1) 연금급여는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 (2) 기본연금액이란 모든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며, 가입자 전체의 소득(소득재분배 기능)과 가입자 본인의 소득(소득비례 기능) 및 가입기간에 따라서 산정됩니다.
- (3) 부양가족연금액이란 연금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가 일정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으로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합니다.

2. 연금급여액 수준

급여수준은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득의 9%(사업장가입자는 본인 부담 4.5%, 사용자 부담 4.5%)로 40년간 납부 시 가입기간이 속한 년도에 따라 소득의 40%~70%(소득대체율*)를 받게 됩니다.

* 소득대체율이란 4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본인 가입중 평균소득과 대비하여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지급수준(지급율)을 말합니다.

가. 기본연금액

기본연금액 산정식

$$= 1.2 \times (A+B) \times (1+0.05n/12)$$

☞ 1년치 연금액이며, 실제 지급할 때는 12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함.

참 고

◆ 가입기간이 여러 구간에 걸쳐있는 경우우 기본연금액 산정액

$$[2.4(A+0.75B) \times P_1/P + 1.8(A+B) \times P_2/P + 1.5(A+B) \times P_3/P + \dots + 1.2(A+B) \times P_{23}/P] \times (1+0.05n/12)$$

- A : 연금수급 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임금상승률 반영)
-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물가상승률 반영)
- P : 전체 가입월수(=보험료 납부월수)
- $P_1 \sim P_{23}$: 연도별 가입월수
- (P_1 : '88년 ~ '98년, P_2 : '99년 ~ '07년, P_3 : '08년, ..., P_{23} : '28년 이후)
- n : 20년 초과 가입월수

※ A, B, n값이 클수록 연금액이 많아짐

| 가입구간별 소득대체율 및 적용 비례상수 |

가입 기간	'88~'98 (P1)	'99~'07 (P2)	'08 (P3)	'09 (P4)	'10 (P5)	'11 (P6)	(...)	'28 이후 (P23)
소득대체율	70%	60%	50%	49.5%	49%	48.5%	(...)	40%
소득대체율에 해당하는 비례상수	2.4	1.8	1.5	1.485	1.47	1.455	(...)	1.2

※ 소득대체율은 0.5%씩, 비례상수는 0.015씩 감소

기본연금액 산정방식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 급여수준 격차를 줄여주며, 물가변동률과 임금상승률을 반영하여 항상 실질가치를 보장해 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 부양가족연금액

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로서 수급 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입니다.

지급대상	요 건	부양가족 연금액
배우자	(사실혼 포함)	연236,360원
자녀 〈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계자녀) 포함〉	18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 당하는 자녀	연157,540원 (1인당)
부모 〈배우자의 부모, 부 또는 모의 배우자(계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부모	연157,540원 (1인당)

※ 2012년 4월~2013년 3월까지 적용되는 부양가족연금액이며 매년 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
(2012년 4.0% 인상조정)

3. 급여 종류별 급여액

가. 노령연금액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은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받게 되며,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사람은 기본연금액에서 일정비율(1년당 5%)로 감액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 노령연금 종류별 급여액 |

구 분	급여수준
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 10년 초과 1년당 기본연금액의 5% 증액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 60세인 경우 – 기본연금액 50%×50%(소득활동에 따른 연령별 지급률) ※ 가입기간 1년 증가 시 마다 기본연금액 지급률 5%씩 증가 ※ 연령 1세 증가 시 마다 연령별 지급률 10%씩 증가 •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음
조기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20년, 55세인 경우 – 기본연금액 100%×연령별지급률 70%+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1년 증가 시 마다 기본연금액 지급률 5%씩 증가 ※ 수급개시연령 1개월 지날 때 마다 연령별지급률 0.5% (1세 지날 시 6%)씩 가산
분할연금	•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중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5년 이상)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

| 노령연금 예상월액 |

(단위 : 원)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월액 (B값)	연금 보험료	가입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1,210,000	108,900	177,380	258,800	336,540	491,630	646,710
3,890,000	350,100	330,240	482,020	626,940	916,040	1250,130

2012년 1월에 최초 가입한 것으로 가정하여 현재의 A값(2012년도 1,891,771원)을 적용 하였으며, 실제 연금수급월액은 연금수급당시의 “A”값 및 “재평가율” 을 적용함

나. 장애연금액

장애등급에 따라 1급~3급까지는 기본연금액(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사람도 20년 가입을 가정)에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져 매월 연금으로 지급되며 장애 4급의 경우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장애등급별 급여수준 |

장애 1급	장애 2급	장애 3급	장애 4급(일시보상금)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의 225%

| 장애연금 예상월액 |

(단위 : 원)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월액 (B값)	연금보험료	장애 등급			장애 일시보상금
		1급	2급	3급	
1,210,000	108,900	372,210	297,770	223,320	10,049,730
3,890,000	350,100	693,810	555,050	416,280	18,723,930

- ◎ 2012년 1월에 최초 가입한 것으로 가정하여 현재의 A값(2012년도 1,891,771원)을 적용 하였으며, 실제 연금수급월액은 연금수급당시의 “A” 값 및 “재평가율”을 적용함

다. 유족연금액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사람도 20년 가입을 가정)의 일정률에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져 매월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 가입기간별 유족연금액 |

10년 미만	10년 이상 ~ 20년 미만	20년 이상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 다만, 노령연금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유족연금 예상월액 |

(단위 : 원)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월액 (B값)	연금보험료	가 입 기 간		
		10년 미만	10년~20년 미만	20년
1,210,000	108,900	148,880	221,560	283,390
3,890,000	350,100	277,520	410,280	513,530

- 2012년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여 현재의 “A”값(2012년도 적용 1,891,771원)으로 산정 [10년 미만은 2012년 1월 가입, 10년~20년 미만은 1998년 1월~2012년 12월(15년), 20년은 1993년 1월~2012년 12월(20년)에 가입한 것으로 가정하여 연금액 산정]
- 가입기간 10년인 노령연금수급권자는 기본연금액의 50%를 노령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이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에 받던 노령연금액을 거의 그대로 지급받게 됩니다.

라. 반환일시금액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며, 이자율은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자격상실일이 속하는 달까지는 3년 만기 정기에금이자율을 적용하고 자격상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는 1년 만기 정기에금이자율 적용합니다.

마. 사망일시금액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최종 기준소득월액(가입 중 결정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 중 마지막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월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제3절 | 수급기간 및 수급방법

1. 수급기간

- (1) 연금급여는 수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2) 노령연금의 경우 수급사유 발생일은 60세 생일이며(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청구일), 장애연금의 경우 완치일 또는 1년 6개월 경과일, 유족연금의 경우 사망일입니다.
- (3) 연금급여 수급권은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소멸하며, 유족연금의 경우 배우자인 수급권자의 재혼,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의 입양 또는 파양, 19세 도달, 장애2급 이상 미해당 등으로 소멸합니다.

2. 수급일

- (1) 연금급여는 매월 25일에 그 달의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 다만, 25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받게 됩니다.
- (2)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의 경우에는 수급요건이 확인되고 구비서류 등이 갖추어진 경우 청구 즉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외국인이 본국귀환(국외이주)을 사유로 출국 전 반환일시금 청구 시 출국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수급방법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의 예금계좌로 지급받게 됩니다.

◎ 연금급여 청구 안내

공단에서는 국민연금 수급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우편이나 전화를 이용한 청구안내는 물론 인터넷을 통한 청구안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를 통해서 국민연금 청구대상여부와 청구대상인 경우 청구할 급여의 종류, 구비서류, 관할 지사 주소 등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4절 | 둘 이상(연금) 급여가 발생한 경우

1. 급여의 조정

우리보다 앞서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 영국, 미국, 덴마크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또는 다른 사회보험에 의한 급여가 중복 지급되는 것을 제한하거나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사람에게 급여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사회보험의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2. 중복급여의 조정(국민연금 급여간 조정)

- (1) 한사람에게 둘이상의 국민연금 급여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선택한 하나만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일정한 경우에는 선택하지 않은 급여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2) 예를 들어,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노령연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선택한 하나의 연금이 지급되고 다른 연금의 지급은 정지되나,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일 경우 선택한 급여와 유족연금의 20% 지급(단, 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경우 유족연금의 20%를 지급하지 아니함)하며,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경우 선택한 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반환일시금은 '사망일시금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단, 선택한 급여가 장애연금이고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반환일시금일 경우 장애연금만 지급함).

3.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국민연금 급여와 다른 법에 따른 급여간 조정)

- (1) 다른 법률에 의해 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국민연금 급여액이 조정(1/2)되거나 일정기간 지급이 정지됩니다.
- (2) 예를 들어,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해당 연금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법」에 의해 장애보상 또는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그 장애 또는 유족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제3장

부 록

부록 1 권리구제제도

부록 2 국민연금법령

부록 3 서식자료

부록 4 지사 연락처 및 관할구역

부록 5 예상연금 월액표

부록1 | 권리구제제도

1. 심사청구제도

가. 심사청구의 개념

국민연금법에 따른 자격, 징수, 급여에 관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심사위원회 또는 징수심사위원회에서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여부를 심사하는 권리구제절차로서 행정심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짐

나. 심사청구의 대상

자격·징수·급여업무에 관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

※ 2011.1.1.부터 연금보험료 징수 관련 업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

- (1) 가입자 자격 취득·상실 결정 통지, 연금보험료 부과, 급여지급결정 통지, 급여수급권 미해당 통지 등 : 공단
- (2) 연금보험료 납입고지, 연체금 부과, 체납처분 등 : 건강보험공단
- (3) 일반적인 제도안내, 가입내역 안내, 예상연금액 조회, 연금보험료 수시독촉, 압류예고 통지, 본 처분에 앞서 이루어지는 상담 및 안내, 공단의 대위권 행사에 따른 구상금 고지행위는 심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됨

다. 심사청구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라. 심사청구 방식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8조의 필요사항을 기재한 심사청구서를 첨부서류와 함께 당해 처분을 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제출

마. 심사의결 및 결정

- (1) 관련법 규정(보건복지부 유권해석 포함) 및 법의 일반원칙 등에 따라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를 심사

(2)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에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 공단이 결정(각하, 기각, 인용)

(가) 각하 : 심사청구가 그 제기요건(청구인 적격, 제기기간 준수여부 등)을 갖추지 못 하여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본안심사를 하지 않고 각하결정을 함

(나) 기각 : 본안심사 결과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청구를 배척하고 공단 처분의 효력을 인정하는 기각결정을 함

(다) 인용 : 본안심사 결과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청구 취지를 받아들여 공단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인용결정을 함

(3) 공단은 결정서 정본을 청구인에게 통지

◎ 국민연금심사위원회 구성 등

- 위원 구성(위원장 포함 26인 이내)
 - － 공단 : 업무이사(위원장) 및 임직원(실장급 이상)중 임명(1인)
 - － 외부 : 사용자, 근로자 및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 변호사, 사회 보험 및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 심사위원회 회의(위원장 포함 8인)
 - － 공단 : 업무이사(위원장) 및 임직원(실장급 이상)중 임명(1인)
 - － 외부 : 사용자, 근로자 및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 각 1인 이상, 변호사, 사회보험 및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3인 이상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2. 재심사 청구

가. 재심사청구의 개념

심사청구에 대한 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정심판 절차임

나. 재심사 청구 기간

심사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3. 행정소송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부록2 | 국민연금법령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사용자(使用者)”란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말한다. 3. “소득”이란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종류에 따른 소득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평균소득월액”이란 매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全員)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말하며, 그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사업장가입자”란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제8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제1장 총 칙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3. 법인의 이사 중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이 없는 사람 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시간강사 나.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제3조(소득의 범위) ① 사업장가입자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의계속가입자(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수급권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수급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사업장임의계속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7. “지역가입자”란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제9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8. “임의가입자”란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제10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9. “임의계속가입자”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입자로 된 자를 말한다. 10. “연금보험료”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부담금 및 기여금의 합계액을,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내는 금액을 말한다. 11. “부담금”이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2. “기여금”이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3. “사업장”이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를 말한다.	가입자”라 한다)의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법인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만 해당한다)의 경우 :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에 따른 소득 2. 근로자의 경우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뺀 소득 제4조(평균소득월액의 산정 방법)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평균소득월액은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법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납부 예외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는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소득월액 총액을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제5조(기준소득월액 및 적용기간) ①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하한액과 상한액의 범위에서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지역가입자는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한다. 1. 하한액: 가목을 나목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에 직전 적용기간의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곱한 금액. 이 경우 만원 미만은 반올림한다. 가.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하여 제37조에 따라 해당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적용하는 금액 나.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하여 제37조에 따라 전년도 4월부터 해당 연도 3월까지 적용하는 금액 2. 상한액 : 제1호가목을 같은 호 나목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에 직전 적용기간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곱한 금액. 이 경우 만원 미만은 반올림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국민연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에 따른 하한액과 상한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한액과 상한액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고시된 하한액과 상한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로 한다. ⑤ 사용자나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이 제3항에 따라 고시된 하한액보다 적으면 그 하한액을, 같은 항에 따라 고시된 상한액보다 많으면 그 상한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제6조(가입자 자격 취득 시와 납부 재개 시의 기준 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 기간) ① 사업장가입자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가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내거나 법 제91조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기간이 끝나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의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결정하되, 그 적용 기간은 자격을 취득한 날이나 납부를 재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7조제1항에 따라 정기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는 달의 전달까지로 한다. 1. 월이나 주 또는 그 밖에 일정 기간으로 소득이 정하여지는 경우 : 그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 2. 일 · 시간 · 생산량 또는 도급으로 소득이 정하여지는 경우 :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 또는 납부를 재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개월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소득월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자의 경우 :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 또는 납부를 재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1개월 동안에 그 지방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제7조(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 기간) ① 사업장가입자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후 가입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매년 공단이 결정하되, 그 적용 기간은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제6조 제1항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제8조(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사업장가입자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가 둘 이상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 근로자 또는 사용자인 경우(하나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로자이면서 다른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소득월액은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다만,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 소득월액의 상한액을 초과하면 각 사업장별 기준소득월액이 그 합하여 계산된 기준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제9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의 특례) ①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제6조에 따라 계산하기 곤란하거나, 제6조 또는 제7조제1항·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신고하거나 신청한 소득이 실제 소득과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결정하되, 그 결정의 기준 및 방법 등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현물로 지급되는 경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우에 그 가액(價額)은 해당 지방의 소비자물가를 기준으로 하여 공단이 정한다. ③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월액에 대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소득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공단이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1.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경우: 해당 가입자의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을 평균 소득월액의 변동률을 기준으로 조정한 금액 2. 가입자 자격 취득 시나 납부 재개 시의 기준 소득월액을 결정하는 경우 :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임의가입자 등에게 적용하는 기준 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 ④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월액에 대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소득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 및 제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 제10조(임의가입자 등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기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한다. 다만, 가입자 본인이 기준소득월액을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기준소득월액의 변경 결정을 할 수 있다. 1. 임의가입자 2.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제외한 임의계속가입자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되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제6조(가입 대상) 국내에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7조(가입자의 종류)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제8조(사업장가입자) ①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상이연금, 퇴역연금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이하 “퇴직연금등수급권자”라 한다).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受給者) ② 제1항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자기가 원하면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는 경우의 기준소득월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사에서 확인된 소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한다.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제18조(가입 대상 제외자) 법 제6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 직종 근로자 2. 법 제61조제4항에 따른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다만,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 중인 자는 제외한다. 제19조(당연적용사업장)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당연적용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1.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 주한 외국 기관으로서 1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② 사업장 상호 간에 본점과 지점·대리점·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 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22조(특수 직종 근로자)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갱내 작업에 한정한다) 2.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의 「수산업법」 제2조에 따른 어업(부원으로서 직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조(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① 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장에 고용된 때 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때 2. 당연적용사업장으로 된 때 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① 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사용관계가 끝난 때 4. 60세가 된 때 5.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제14조(자격의 확인) ①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은 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의 확인에 의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의 취득 및 상실 시기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은 가입자의 청구, 제21조에 따른 신고 또는 직권으로 한다. ④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는 언제든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의 취득·상실 및 가입자 종류의 변동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① 국민연금가입기간(이하 “가입기간”이라 한다)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은 가입기간에 산입하되, 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에 자격을	접 어로작업에 종사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특수 직종 근로자로서의 연금 가입 기간이 그의 전(全)연금가입기간의 5분의 3에 미달하면 특수 직종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다시 취득하면 다시 취득한 달을 중복하여 가입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이 그 속하는 달의 초일인 경우(자격취득일이 속하는 달에 다시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3.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제21조(신고) ①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면적용사업장에 해당된 사실, 사업장의 내용 변경 및 휴업폐업 등에 관한 사항과 가입자 자격의 취득·상실, 가입자의 소득월액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의 취득·상실, 이름 또는 주소의 변경 및 소득에 관한 사항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나 그 밖의 가족이 신고를 대리(代理)할 수 있다. 제22조(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 ① 국민연금공단은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면 그 뜻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에 관하여는 제2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3조(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 등) ① 국민연금공단은 제14조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상실에 관한 확인을 한 때와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그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 취득·상실에 관한 확인을 한 때와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그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이를 해당 사업장가입자 또는 그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 통지하되, 그 통지를 받을 자의 소재를 알수 없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국민연금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민연금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1. 사업장이 폐지된 경우 2.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을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3. 제2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통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 중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②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으로 한다. 제88조의2(납입의 고지 등) ①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이 제88조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부과한 때에는 그 납부 의무자에게 연금보험료의 금액, 납부 기한, 납부 장소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입의	제5장 비용부담 및 연금보험료 징수 등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89조제4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자동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기간 동안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납부 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납입의 고지를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고지에 대한 신청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건강보험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고지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저장하거나 납부 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납부 의무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④ 제90조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자 중 1명에게 한 고지는 다른 연대 납부 의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제89조(연금보험료의 납부 기한 등) ① 연금보험료는 납부 의무자가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이하 “농어업인”이라 한다)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분기별 연금보험료를 해당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낼 수 있다. ② 연금보험료를 납부 기한의 1개월 이전에 미리 낸 경우에는 그 전달의 연금보험료 납부 기한이 속하는 날의 다음 날에 낸 것으로 본다. ③ 납부 의무자가 연금보험료를 미리 낼 경우 그 기간과 감액(減額)할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납부 의무자가 연금보험료를 자동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⑤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지서의 송달 지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부 기한으로부터 1개월 범위에서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⑥ 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받으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납부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0조(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①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면 공제계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장가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는 법인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①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2.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3. 「초·중등교육법」 제2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4. 「행형법」 제2조에 따른 교도소 등에 수용 중인 경우 5.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6.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이 경우 행방불명의 인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0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법 제91조제1항 제7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 경우 2.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또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보조나 지원의 대상이 된 경우 3. 재해나 사고 등의 발생으로, 연금보험료를 낼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소득이 감소된 경우 제61조(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신청 등) ① 사용자나 지역가입자는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지역가입자에게 법 제91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의 발생기간에 대하여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부 예외 사유가 발생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미 연금보험료를 낸 경우 그 낸 연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제89조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독촉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90조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연대하여 내야 하는 자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다른 연대 납부 의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④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건강보험공단은 제4항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매각할 때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매각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대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 매각은 건강보험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⑥ 건강보험공단은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7조(연체금) ①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제89조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까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	금보험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단은 법 제91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시작일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그 예외 사유의 종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는 자의 납부 예외 사유가 끝날 때에는 미리 그 사실을 해당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법 제91조제1항제6호에 따른 행방불명의 경우에 관한 인정기준은 제20조제1항을 준용한다. ⑥ 납부 예외 기간은 납부 예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로 한다. 1.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그 달의 초일인 경우 2. 가입자가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하는 경우 제63조(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징수) 공단은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부과할 때 그 사업장가입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된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이거나 사용자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부과한다. 다만, 국민연금에 가입된 둘 이상의 사업장 중에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에 해당하는 소득월액을 지급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에서만 부과한다. 제64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①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의 납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9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8조(연금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는 순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와 같은 순위로 한다. 제100조(과오납금의 충당과 반환) ① 공단은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 비에서 발생한 과오납금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오납금을 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공단은 이를 반환결정하여야 하고, 건강보험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과오납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 제100조의2(지역가입자 보험료납부 의제적용)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당연적용사업장이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사용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른 탈퇴 신고를 할 때까지 납부한 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보험료로 본다. 제100조의3(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로서 국민인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소득을 얻는 경우 해당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	부를 독촉할 때에는 납부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가입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73조의2(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 ① 법 제10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이란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 중 사용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외한 근로자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4(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가 이 법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대상자의 확인, 환수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및 제3항에 따른 결손처분은 공단에 위탁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환수에 관하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 제7장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제108조(심사청구) ①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제110조(재심사청구) 제108조에 따른 심사 청구에	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1.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2.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연도 중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지원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당연직용사업장이 되어 그 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직용사업장이 된 달부터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된 사업장이 해당 연도에 3개월 연속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연도의 마지막 달까지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중단한다. ③ 법 제10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소득”이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이 근로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가입현황,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다른 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3조의3(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 ① 법 제100조의3제2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근로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법 제89조에 따른 납부 기한 내에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2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와 재결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② 제110조에 따른 재심사청구 사항에 대한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는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본다.	납부하였는지를 매월 확인한 후 해당 월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한다. 이 경우 지원 기간은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연도의 마지막 달까지로 한다. ④ 사업장이 매년 말 현재 연금보험료를 지원받고 있고 해당 연도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1일에 제2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다음 연도의 연금보험료를 계속 지원할 수 있다. ⑤ 제73조의2제2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이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마지막 달까지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못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금보험료의 지원신청 및 결과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115조(시효) ① 연금보험료, 환수금,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권리는 3년간, 급여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 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각각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그 급여 전액에 대하여 지급이 정지되어 있는 동안은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③ 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 등의 납입 고지, 제57조의2제2항 및 제95조제1항에 따른 독촉과 급여의 지급 또는 과오납금 등의 반환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④ 제3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입 고지나 독촉에 따른 납입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된다. ⑤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이나 과오납금 등의 반환청구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 그 서류의 송달에 들어간 일수는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3조의4(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① 공단은 법 제100조의4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환수한다. 1. 지원신청 당시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 지원받은 금액 전부 2. 제73조의2제2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계속 지원받았음이 확인된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이후부터 지원받은 금액 3. 지원대상 근로자(해당 연도에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새로 취득한 근로자에 한정한다)의 다음 연도의 기준소득월액이 제73조의2제3항에 따라 고시한 소득상한액의 1천분의 1천100을 초과한 경우 : 해당 근로자가 지원받은 금액 전부 4. 그 밖에 사용자의 미신고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원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 잘못 지원된 금액
제119조(근로자의 권의 보호) 사용자는 근로자가 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昇級) 또는 임금 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② 공단은 법 제100조의4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실을 통지한 후 환수할 금액을 고지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 절차에 관하여는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해고(解·雇)나 그 밖의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2조(조사·질문 등) ① 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또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나 수급권 또는 급여의 발생변경소멸정지 등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용자,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질문하는 공단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25조(소득축소·탈루자료 통보 등) ① 공단은 제21조에 따른 소득월액 등의 신고내용에 축소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소득축소 또는 탈루혐의 자료를 문서로 작성하여 국세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세를 통보받은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조사 결과 중 소득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외국인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 외국인에게는 제77조부터 제79조	용한다. 제7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제88조(심사청구의 방식) ① 법 제108조에 따른 심사청구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되, 청구인이 기명날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3.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4.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5.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6. 심사청구의 연월일 7. 청구인이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닌 경우 처분을 받은 자와의 관계 8. 첨부 서류의 표시 ② 청구인 및 처분을 받은 자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③ 청구인의 대리인이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덧붙여야 한다. 제8장 보 칙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외국인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필요한 연수기간 동안 지정된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자 제127조(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대한민국이 외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경우에는 이 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가입, 연금보험료의 납부, 급여의 수급 요건, 급여액의 산정,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 그 사회보장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0조(소득축소·탈루자료의 통보 절차) ① 공단은 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나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득의 축소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1.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소득과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해당 업종별·직종별 평균 소득 등보다 뚜렷하게 낮은 경우 3. 임금 대장이나 그 밖에 소득 관련 서류 또는 장부 등의 내용과 다른 경우 ② 공단은 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소득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으면 그 결과를 해당 가입자의 소득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1조(당연 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 법 제126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조제1항에 따라 당연히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되는 외국인에서 제외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자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자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112조(외국인에 대한 통지) 공단은 법 제126조 제1항에 따라 당연히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되는 외국인에게는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국민연금가입자가 된다는 사실과 법에 따른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13조(외국인가입자에 대한 반환일시금의 지급) 법 제126조제2항제1호에서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란 외국인의 본국 법에서 법 제4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에 상응하는 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법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해당 대한민국 국민이 가입기간 중 낸 연금보험료에 기초하여 셈하여 정한 일정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부록3 | 서식자료

▶ 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

[연금정보] - [자료실] - [서식자료] - [사업장]

연금정보

다양하고 유익한 연금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연금정보 | 자료실 | 서식자료

서식자료

전체
사업장
개인
연금청구
사회보장협정
심사청구
기타

제목

검색

* 검색어 : 임의가입자 가입/탈퇴 신청서, 제증명발급신청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서식계수선택

10개

번호	구분	제 목	작성 예시	다운 로드	팩스 전송	메일 전송	조회수
20	[사업장]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외국인 포...					307024
19	[사업장]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300155
18	[사업장]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263150
17	[사업장]	사업장 내용변경신고서					142767
16	[사업장]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일반사업 장용)					133077
15	[사업장]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건설현장 사업...					56776
14	[사업장]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 청서					131622
13	[사업장]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 고서					38018
12	[사업장]	사업장 탈퇴신고서					82689
11	[사업장]	제증명발급신청서					57130

1

2

3

배론서비스

마이페이지

자사찾기

신고서찾기

이용자가이드

인터넷
납부서비스

내연금 알아보기

부록4 | 지사 연락처 및 관할구역

지사명	주 소	전화번호	FAX	관할구역
본부	서울 송파구 교통공원길 13 (신천동7-16) 국민연금회관	02)2240-1114	02)3485-9830	-
종로 중구	서울시 중구 충무로3가 60번지 1호 극동빌딩 15층	02)397-9566	02)3485-2701	중구, 종로구
동대문 중랑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144 (신설동101-2) 경영빌딩 6층	02)920-0502~6	02)3485-2713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 강북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14 (번동 446-8) 삼성화재빌딩 6,7층	02)901-2802~6	02)3485-2724	성북구, 강북구
도봉 노원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 383 (창4동 9-3) 국민은행빌딩 5/6층	02)2211-2803~6	02)3485-2734	도봉구, 노원구
성동 광진	서울시 광진구 아차성길 71 (광장동 445-5) 대한제지빌딩 3층	02)3408-6701~5	02)3485-2743	성동구, 광진구
서대문 은평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742 (불광동 272-51) 대한생명 3층	02)350-5507, 5511, 5552, 5582	02)3485-2836	서대문구, 은평구
용산	서울시 용산구 갈월(한강대로259) 101-49 고려빌딩 3층	02)6220-2202~5	02)3485-2871	용산구
마포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65번지 서울대 장학빌딩 3층	02)2176-9850~6	02)3485-2843~6	마포구
고양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 구마두동 1010 KT프라자 3층	031)920-5410~4	031)303-2003	고양시
파주	경기도 파주시 금촌 2동 1023번지 파주우체국 3층	031)956-3602~5	031)303-2223	파주시 개성공업지구
의정부	의정부시시민로62 (의정부 2동 493-1) 삼성생명빌딩2층	031)855-0701~3	031)303-2184	의정부시, 연천군,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중앙로 96 (송우리 726-84호) 송우웰빙타운 5층	031)540-8011~3	031)303-2283	포천시, 철원군

지사명	주 소	전화번호	FAX	관할구역
구리 남양주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163 (교문동 245-8) 청광노블하임빌딩 5층	031)550-5734	031)303-2023	구리시 남양주시 양평군
강남 신사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28 (논현동4-15) 국민연금 강남회관 2층	02)3416- 6041~47 3416-6071~79	02)3485-2773~4	신사동, 논현동, 압구정동, 청담동, 삼성동
강남 역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2 KT빌딩 4층	02)2186-4007~11	02)3485-2882~3	대치, 역삼, 도곡, 개포, 포이, 일원, 수서, 자곡, 세곡, 율현동
송파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99 (신천동) 대한제당빌딩 2층	02)3433-5702~5	02)3485-2753	송파구
강동 하남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102 (성내동 199-10) 강동웨딩문화센터 8층	02)480-8860~8	02)3485-2763	강동구, 하남시
서초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13 (양재동24) 엘타워3층(3호선양재 역7번출구)	02)3415-0301~79	02)3485-2783	서초구
관악 동작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26 경동제약빌딩 4층(인현동1659-5)	02)6934-2001~2	02)3485-2793	관악구, 동작구
구로 금천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86(가산동) 리더스타워 2층 (가산디지털단지역4번출구)	02)2085-1500~6	02)3485-2803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43 (당산4가93-1) 동양타워 5층	02)2629-2301~4	02)3485-2813	영등포구
강서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287 화인빌딩 5층 (등촌3동 673-5)	02)2086-7150~5	02)3485-2823	강서구
양천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81 (신정동 322-11) 해누리타운 9층	02)6345-9031~4	02)3485-2863	양천구
춘천	강원도 춘천시 경춘대로 103 (온의동513) 한국교직원공제회강원회관3층	033)259-7722	033)249-8163	춘천시, 홍천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가평군
강릉	강릉시 경강로 2224번길 12 (포남동 892-7)	033)640-9300~3	033) 249-8103	강릉시, 고성군, 속초시, 양양군

지사명	주 소	전화번호	FAX	관할구역
삼척	강원도 삼척시 하실길77 (교동207번지1호) 삼척종합운동 장앞 철길옆 구도로에 위치	033)571-2121~3	033)249-8123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원주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무실동 1) 원주시청 9층	033)749-8401	033)249-8145	원주시, 횡성군 평창군, 영월군 정선군
수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205 (인계동 1038-1) 삼성화재 8층	031)229-4002~5	031)303-2082	수원시
용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25-6(중동842) 주네브스타월드빌딩 9층	031)288-1350	031)303-2163	용인시
화성 오산	경기 화성시 병점2로 6 (병점동406-1) 금강빌딩 5층	031)229-6010~4	031)303-2263	화성시, 오산시
안양 과천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악로 관악대로 360 (관양동 1451) 캠브리지빌딩 5층	031)420-2031~7	031)303-2143	안양시, 과천시
군포 의왕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24번길 8 (금정동847-2) 동영센트럴타워 5층	031)390-8001~4	031)303-2043	군포시, 의왕시
성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야탑동344-1) 코리아디자인센터 4층	031)778-0301~4	031)303-2063	성남시
이천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203 (중리동 218-2) 하나빌딩 5층	031)630-7923~9	031)303-2203	이천시, 여주군 광주시
평택	경기도 평택시 평택2로 34 (평택동 32-2) 삼성생명B/D 3,5층	031)659-0820~29	031)303-2244	평택시, 안성시
안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59(고잔동 523-3) 삼성화재 2층	031)481-7701	031)303-2124	안산시
광명	경기도 광명시 철산로5 (철산동 250) 융창상호저축은행 3층	02)2610-2822~3	02) 3485-2852	광명시
시흥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 188 (정왕동1726-5) 한국산업은행 5층	031)488-2701~4	031)303-2103	시흥시
부천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232 (심곡본동 671-1) 대신증권 6층	032)610-2302~4	032)211-7083	부천시

지사명	주 소	전화번호	FAX	관할구역
남동연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말로20 (구월1동 1462-1) 국민연금인천회관3층	032)451-0702~8	032) 211-7063	남동구, 연수구
서인천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84 (심곡동303-1) 새터빌딩2,3층 (서부소방서옆건물)	032)560-0501~3	032)211-7043	서구, 강화군 김포시
남인천	인천시 남구 경인로 351 (주안1동 191-2) 대한생명빌딩 7층	032)770-3500	032) 211-7003	남구, 중구 동구, 용진군
부평계양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75 (부평동 529-15) 대한생명빌딩 15층	032)500-8111~4	032)211-7023	부평구, 계양구
대전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6 (탄방동 608) 국민연금대전회관 4층	042)480-4881~8	042)388-2003	서구, 논산시 계룡시
동대전	대전 중구 중앙로 119 삼성생명빌딩 14층	042)720-4010~15	042)388-2023	중구, 동구 금산군
북대전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산로 2 (중리동122-1) 조은크리닉 4층	042)670-1021~6	042)388-2042	대덕구, 유성구
청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362번길20(서문동14-1번지) 국민연금청주회관4층	043)251-5100	043)901-5003	청주시, 청원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옥천	충북 옥천군 옥천읍 문장로 96 (장야리 288) 하나로타워 3,4층	043)730-27100	043)901-5023	옥천군, 보은군 영동군
충주	충주시 국원대로 242 (금릉동 45-1) 국민연금 충주회관	043)840-0770	043)901-5041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음성군
공주	충남 공주시 무령로 204 (반죽동 1-2) 금성빌딩 1,2층	041)850-3851~4	041) 901-5003	공주시, 연기군 부여군
천안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6로 60 (청당동 718) 국민연금 천안회관	041)550-8902~5	041)901-5043	천안시, 아산시
홍성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347 (옥암리 118-1) 대왕빌딩 2층	041)630-8131~6	041)901-5063	서산시, 태안군, 홍성군 예산군, 당진군
보령	충남 보령시 동현로27 (동대동576-1) 국민연금회관	041)930-6601~3	041)901-5023	보령시, 청양군 서천군

지사명	주 소	전화번호	FAX	관할구역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51 (우산동1582-4) 국민연금공단 광주회관	062)958-2001~6	062) 455-3003	서구, 광산구 나주시, 영광군
동광주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54-1 (5가 57번지) 아모레퍼시픽빌딩 8층	062)230-0702~5	062)455-3023	동구, 남구, 화순군, 곡성군
북광주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80 (유동33-43) 송강빌딩 1,2층	062)520-8101~4	062)455-3043	북구, 담양군 장성군
전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13(서신동 769) 국민연금 전주회관 1,3층	063)270-5321~8	063)900-3044	전주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익산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12길 42 (주현동 116번지 23호) 국민연금공단 익산지사	063)850-0310~3	063)900-3023	익산시, 군산시
정읍	전북 정읍시 충정로 97 (상동 319-42) 국민연금 정읍회관	063)530-5801~2	063)900-3065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남원	전북 남원시 의창로 116(동충동 401번지) 국민연금 남원회관	063)620-3410~3	063) 900-3003	남원시,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순천	전남 순천시 팔마로 334 (연향동 1692-7)	061)729-3001	061)900-7024	순천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광양시
여수	전남 여수시 공화북 2길 24 (공화동 1094) 국민연금 여수회관	061)640-2540~2	061)900-7043	여수시
목포	전남 목포시 영산로 118 (호남동129) KT목포지점 6층	061)245-5491~3	061-900-7003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함평군 영암군
해남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교육청길 16-16(해리392-7) 국민연금 해남회관	061)536-0325~8	061)900-7063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강진군 장흥군
제주	제주시 청사로 3길 11-1 (도남동664-4) 국민연금 제주회관	064)720-4001	064)720-5703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대구	대구시 달서구 성서로 419 (이곡동 1198-5) 국민연금 대구회관 2층	053-589-4561~7	053)288-7043	달서구, 성주군

지사명	주 소	전화번호	FAX	관할구역
서대구	대구시 북구 고성동3가 103번지 (KT북대구지사1~2층) 국민연금공단 서대구지사	053)380-3011~5	053)288-7083~4	서구, 북구
동대구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2095 (덕산동110) 삼성금융프라자 8층	053)430-7810~4	053)288-7063	동구, 중구
대구 수성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2397 (범어3동41-3) LIG손해보험 대구사옥 11층	053-750-9121~6	053)288-7003	수성구, 경산시 청도군
대구 남구 달성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00 (대명2동 2010-1) 우체국보험 대구회관 6층	053)470-1510~4	053)288-7023	남구, 달성군 고령군
경주	경북 경주시 화랑로 125 (성동동386-6) KT 경주지사 4층	054)770-3901~4	054)613-5003	경주시, 영천시
포항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46 (대도동 135-19번지)	054)280-0801~5	054)613-5103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안동	경북 안동시 광명로211 (옥동617-6)	054)850-9031~3	054)613-5063	안동시, 영양군 의성군, 청송군
영주	경북 영주시 선비로 182(영주2동 555-3) 영주상공회의소 2, 4층	054)639-8015	054)613-5081	영주시, 봉화군
문경	경북 문경시 매봉로45 국민연금 문경회관	054)550-3302~3	054)613-5043	문경시, 상주시 예천군
구미	경북 구미시 송원동로 5 신한금융투자빌딩 2층	054)450-8501~4	054)613-5023	구미시, 김천시 군위군, 칠곡군
부산	부산 연제구 연산동1422-8 (중앙로1992) 국민연금 부산회관 4층 부산지사	051)797-7081~9	051)910-8043~4	부산진구 연제구
중부산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88-7(충장대로7) 교보생명보험(주) 중앙동 사옥 3층	051)660-3230~1	051)910-8103	중구, 동구 영도구
서부산	부산시 사하구 하단2동 528-11번 지 삼성전자빌딩 10층	051)290-3510	051)910-8083	사하구, 서구

지사명	주 소	전화번호	FAX	관할구역
북부산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200 (덕천2동 403-2) 무궁화 빌딩 8,9층	051)603-1140~8	051)910-8063	강서구, 사상구 북구
동래 금정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190 (명륜동 510-6번지) 한화생명빌딩 8층	051)550-7570, 7573	051)910-8024	동래구, 금정구
남부산	부산시 남구 수영로 323 (대연3동73-1) 태강프라자빌딩 8,9층	051)610-6371~8	051)910-8008	해운대구, 남구 수영구, 기장군
남울산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179 (신정2동 649-7) 대한생명빌딩 4층	052)257-9450~8	052)930-7023	남구, 울주군
동울산	울산광역시 중구 구교로 63 (학산동47-20) 울산방송(UBC)빌딩 1,2층	052)290-6111~4	052)930-7003	중구, 동구 북구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 4(신월동101-1) 국민연금 창원회관 1층,4층	055)278-9008	055)600-8303~4	창원시, 진해시 창녕군
마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00 (석전동224-5) 대한생명빌딩 11층	055)290-4602~6	055)600-8244	마산시, 함안군 의령군
김해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58 (부원동 830-1) 부원동 우체국 4층	055)320-8340	055)600-8223	김해시, 밀양시
통영	경상남도 통영시 신죽3길16 (광도면 죽림리 1585-63) 국민연금 통영회관	055)650-8501~5	055)600-8323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진주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973 (강남동25-2) 알리안츠생명빌딩 2~3층(제일예식장 옆)	055)760-0601~4	055)600-8283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 군, 산청군
거창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소만3길 56 (대동리214번지)	055)945-0735~6	055)600-8203	거창군, 함천군 함양군
양산	경남 양산시 청운로 358 (물금읍 범어리 2714-3)	055)371-1501	055)600-8263	양산시

부록5 | 예상연금 월액표

▶ 노령연금 예상월액표

평균소득월액(A값)1,891,771 / (단위 : 월/원)

순번	기준소득 월액평균 (B값)	연금 보험료 (9%)	가입기간						
			10년 (50%)	15년 (75%)	20년 (100%)	25년 (100%)	30년 (100%)	35년 (100%)	40년 (100%)
1	240,000	21,600	121,910	177,860	231,290	240,000	240,000	240,000	240,000
2	250,000	22,500	122,480	178,700	232,38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3	260,000	23,400	123,050	179,530	233,460	260,000	260,000	260,000	260,000
4	270,000	24,300	123,620	180,370	234,55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5	290,000	26,100	124,770	182,040	236,720	290,000	290,000	290,000	290,000
6	310,000	27,900	125,910	183,710	238,890	293,930	310,000	310,000	310,000
7	340,000	30,600	127,620	186,210	242,140	297,940	340,000	340,000	340,000
8	370,000	33,300	129,340	188,710	245,400	301,940	358,490	370,000	370,000
9	400,000	36,000	131,060	191,210	248,650	305,950	363,240	400,000	400,000
10	440,000	39,600	133,340	194,550	252,990	311,290	369,580	427,870	440,000
11	480,000	43,200	135,630	197,890	257,330	316,630	375,920	435,210	480,000
12	520,000	46,800	137,920	201,230	261,670	321,970	382,260	442,550	502,850
13	570,000	51,300	140,780	205,400	267,100	328,640	390,190	451,730	513,270
14	620,000	55,800	143,640	209,570	272,520	335,320	398,110	460,900	523,700
15	670,000	60,300	146,500	213,740	277,950	341,990	406,040	470,080	534,120
16	730,000	65,700	149,930	218,750	284,460	350,000	415,550	481,090	546,630
17	790,000	71,100	153,360	223,760	290,970	358,010	425,060	492,100	559,140
18	850,000	76,500	156,790	228,760	297,480	366,020	434,570	503,110	571,650
19	920,000	82,800	160,790	234,600	305,070	375,370	445,660	515,950	586,250
20	990,000	89,100	164,800	240,440	312,670	384,710	456,760	528,800	600,840
21	1,060,000	95,400	168,800	246,280	320,260	394,060	467,850	541,640	615,440
22	1,130,000	101,700	172,800	252,120	327,860	403,400	478,950	554,490	630,030
23	1,210,000	108,900	177,380	258,800	336,540	414,080	491,630	569,170	646,710
24	1,290,000	116,100	181,950	265,470	345,220	424,760	504,310	583,850	663,390
25	1,380,000	124,200	187,100	272,980	354,980	436,780	518,570	600,360	682,160

순 번	기준소득 월액평균 (B값)	연금 보험료 (9%)	가입기간						
			10년 (50%)	15년 (75%)	20년 (100%)	25년 (100%)	30년 (100%)	35년 (100%)	40년 (100%)
26	1,470,000	132,300	192,250	280,490	364,750	448,790	532,840	616,880	700,920
27	1,560,000	140,400	197,390	288,000	374,510	460,810	547,100	633,390	719,690
28	1,660,000	149,400	203,110	296,350	385,360	474,160	562,950	651,740	740,540
29	1,760,000	158,400	208,830	304,690	396,210	487,510	578,800	670,090	761,390
30	1,860,000	167,400	214,550	313,030	407,060	500,860	594,650	688,440	782,240
31	1,970,000	177,300	220,840	322,210	419,000	515,540	612,090	708,630	805,170
32	2,080,000	187,200	227,130	331,390	430,930	530,230	629,520	728,810	828,110
33	2,190,000	197,100	233,420	340,570	442,870	544,910	646,960	749,000	851,040
34	2,300,000	207,000	239,710	349,750	454,800	559,600	664,390	769,180	873,980
35	2,420,000	217,800	246,570	359,760	467,820	575,620	683,410	791,200	899,000
36	2,540,000	228,600	253,440	369,770	480,840	591,640	702,430	813,220	924,020
37	2,670,000	240,300	260,870	380,620	494,950	608,990	723,040	837,080	951,120
38	2,800,000	252,000	268,310	391,460	509,050	626,350	743,640	860,930	978,230
39	2,940,000	264,600	276,310	403,150	524,240	645,040	765,830	886,620	1,007,420
40	3,080,000	277,200	284,320	414,830	539,430	663,730	788,020	912,310	1,036,610
41	3,230,000	290,700	292,900	427,340	555,710	683,750	811,800	939,840	1,067,880
42	3,380,000	304,200	301,470	439,860	571,980	703,780	835,570	967,360	1,099,160
43	3,600,000	324,000	314,060	458,210	595,850	733,150	870,440	1,007,730	1,145,030
44	3,680,000	331,200	318,630	464,890	604,530	743,830	883,120	1,022,410	1,161,710
45	3,750,000	337,500	322,630	470,730	612,130	753,170	894,220	1,035,260	1,176,300
46	3,890,000	350,100	330,240	482,020	626,940	771,490	916,040	1,060,580	1,250,130

- 【주】 1. 연금액산정 : $\{1.44 \times (A+B) \times P_1 / P + 1.425 \times (A+B) \times P_2 / P + \dots + 1.2 \times (A+B) \times P_{18} / P\} \times (1 + 0.05n / 12)$. "A" - 연금수급전 3년간 전
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n" - 20년초과
가입월수
2.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 연236,360원, 자녀/부모 1인당 연157,540원의 부양가족연금
액이 가산됩니다.
3. 2012년 1월에 최초 가입한 것으로 가정하여 현재의 "A"값(2012년도 적용 1,891,771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실제
연금수급월액은 연금수급당시의 "A"값 및 재평가율을 적용합니다.
4. 연금의 월지급액(부양가족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이었던 최종 5년간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5. 기준소득월액 3,890,000원은 2012.6월까지의 상한액 3,750,000원 가입 가정

▶ 장애연금예상월액표

평균소득월액(A값)1,891,771 / (단위:월/원)

순 번	기준소득월액 평균(B값)	연금보험료 (9%)	장애 1급	장애 2급	장애 3급	일시보상금 (장애 4급)
1	240,000	21,600	240,000	204,650	153,480	6,906,930
2	250,000	22,500	250,000	205,610	154,200	6,939,330
3	260,000	23,400	258,210	206,570	154,920	6,971,730
4	270,000	24,300	259,410	207,530	155,640	7,004,130
5	290,000	26,100	261,810	209,450	157,080	7,068,930
6	310,000	27,900	264,210	211,370	158,520	7,133,730
7	340,000	30,600	267,810	214,250	160,680	7,230,930
8	370,000	33,300	271,410	217,130	162,840	7,328,130
9	400,000	36,000	275,010	220,010	165,000	7,425,330
10	440,000	39,600	279,810	223,850	167,880	7,554,930
11	480,000	43,200	284,610	227,690	170,760	7,684,530
12	520,000	46,800	289,410	231,530	173,640	7,814,130
13	570,000	51,300	295,410	236,330	177,240	7,976,130
14	620,000	55,800	301,410	241,130	180,840	8,138,130
15	670,000	60,300	307,410	245,930	184,440	8,300,130
16	730,000	65,700	314,610	251,690	188,760	8,494,530
17	790,000	71,100	321,810	257,450	193,080	8,688,930
18	850,000	76,500	329,010	263,210	197,400	8,883,330
19	920,000	82,800	337,410	269,930	202,440	9,110,130
20	990,000	89,100	345,810	276,650	207,480	9,336,930
21	1,060,000	95,400	354,210	283,370	212,520	9,563,730
22	1,130,000	101,700	362,610	290,090	217,560	9,790,530
23	1,210,000	108,900	372,210	297,770	223,320	10,049,730
24	1,290,000	116,100	381,810	305,450	229,080	10,308,930
25	1,380,000	124,200	392,610	314,090	235,560	10,600,530
26	1,470,000	131,130	403,410	322,730	242,040	10,892,130
27	1,560,000	140,400	414,210	331,370	248,520	11,183,730
28	1,660,000	149,400	426,210	340,970	255,720	11,507,730

순 번	기준소득월액 평균(B값)	연금보험료 (9%)	장애 1급	장애 2급	장애 3급	일시보상금 (장애 4급)
29	1,760,000	158,400	438,210	350,570	262,920	11,831,730
30	1,860,000	167,400	450,210	360,170	270,120	12,155,730
31	1,970,000	177,300	463,410	370,730	278,040	12,512,130
32	2,080,000	187,200	476,610	381,290	285,960	12,868,530
33	2,190,000	197,100	489,810	391,850	293,880	13,224,930
34	2,300,000	207,000	503,010	402,410	301,800	13,581,330
35	2,420,000	217,800	517,410	413,930	310,440	13,970,130
36	2,540,000	228,600	531,810	425,450	319,080	14,358,930
37	2,670,000	240,300	547,410	437,930	328,440	14,780,130
38	2,800,000	252,000	563,010	450,410	337,800	15,201,330
39	2,940,000	264,600	579,810	463,850	347,880	15,654,930
40	3,080,000	277,200	596,610	477,290	357,960	16,108,530
41	3,230,000	290,700	614,610	491,690	368,760	16,594,530
42	3,380,000	304,200	632,610	506,090	379,560	17,080,530
43	3,600,000	324,000	659,010	527,210	395,400	17,793,330
44	3,680,000	331,200	668,610	534,890	401,160	18,052,530
45	3,750,000	337,500	677,010	541,610	406,200	18,279,330
46	3,890,000	350,100	693,810	555,050	416,280	18,732,930

- [주]**
1. 연금액산정 : $1.44(A+B)(1+0.05n/12)$. “A”- 연금수급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B”-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평균소득월액, “n”- 20년초과 가입월수(상기 예상연금월액은 가입 기간 20년이하 기준임)
 2.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 연236,360원, 자녀/부모 1인당 연157,540원의 부양 가족연금액이 가산됩니다.
 3. 2012년 1월에 최초 가입한 것으로 가정하여 현재의 “A”값(2012년도 적용 1,891,771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실제 연금수급월액은 연금수급당시의 “A”값 및 재평가율을 적용합니다.
 4. 연금의 월지급액(부양가족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이었던 최종 5년간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5. 기준소득월액 3,890,000원은 2012.7월부터 가입 가정

▶ 유족연금예상월액표

평균소득월액(A값)1,891,771 / (단위:월/원)

순 번	가입기간중 기준 소득월액평균액 (B값)	연금보험료	가입기간		
		(9%)	10년미만	10년~20년미만	20년
1	240,000	21,600	102,320	153,260	200,090
2	250,000	22,500	102,800	153,960	200,950
3	260,000	23,400	103,280	154,670	201,800
4	270,000	24,300	103,760	155,370	202,660
5	290,000	26,100	104,720	156,780	204,380
6	310,000	27,900	105,680	158,190	206,100
7	340,000	30,600	107,120	160,300	208,670
8	370,000	33,300	108,560	162,410	211,250
9	400,000	36,000	110,000	164,530	213,830
10	440,000	39,600	111,920	167,340	217,260
11	480,000	43,200	113,840	170,160	220,700
12	520,000	46,800	115,760	172,980	224,130
13	570,000	51,300	118,160	176,500	228,430
14	620,000	55,800	120,560	180,020	232,720
15	670,000	60,300	122,960	183,540	237,010
16	730,000	65,700	125,840	187,760	242,170
17	790,000	71,100	128,720	191,990	247,320
18	850,000	76,500	131,600	196,210	252,470
19	920,000	82,800	134,960	201,140	258,480
20	990,000	89,100	138,320	206,070	264,490
21	1,060,000	95,400	141,680	211,000	270,500
22	1,130,000	101,700	145,040	215,930	276,520
23	1,210,000	108,900	148,880	221,560	283,390
24	1,290,000	116,100	152,720	227,200	290,260
25	1,380,000	124,200	157,040	233,540	297,980
26	1,470,000	131,130	161,360	239,870	305,710
27	1,560,000	140,400	165,680	246,210	313,440

순 번	가입기간중 기준 소득월액평균액 (B값)	연금보험료	가입기간		
		(9%)	10년미만	10년~20년미만	20년
28	1,660,000	149,400	170,480	253,250	322,030
29	1,760,000	158,400	175,280	260,290	330,620
30	1,860,000	167,400	180,080	267,340	339,200
31	1,970,000	177,300	185,360	275,080	348,650
32	2,080,000	187,200	190,640	282,830	358,100
33	2,190,000	197,100	195,920	290,570	367,540
34	2,300,000	207,000	201,200	298,320	376,990
35	2,420,000	217,800	206,960	306,770	387,290
36	2,540,000	228,600	212,720	315,220	397,600
37	2,670,000	240,300	218,960	324,370	408,760
38	2,800,000	252,000	225,200	333,530	419,930
39	2,940,000	264,600	231,920	343,390	431,950
40	3,080,000	277,200	238,640	353,240	443,970
41	3,230,000	290,700	245,840	363,810	456,850
42	3,380,000	304,200	253,040	374,370	469,730
43	3,600,000	324,000	263,600	389,860	488,630
44	3,680,000	331,200	267,440	395,490	495,500
45	3,750,000	337,500	270,800	400,420	501,510
46	3,890,000	350,100	277,520	410,280	513,530

- [주]**
1. 가입자 사망당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이 있을 경우 자녀/부모 1인당 연157,540원의 부양가족 연금액이 가산됩니다.
 2. 2012년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여 현재의 “A”값(2012년도 적용 1,891,771원)으로 산정 (10년 미만은 2012년 1월 가입, 10년~20년 미만은 1998년 1월~2012년 12월(15년), 20년은 1993년 1월~2012년 12월(20년)에 가입한 것으로 가정하여 연금액 산정)
 3. 연금의 월지급액(부양가족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이었던 최종 5년간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단,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알기 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2012년 12월 인쇄

2012년 12월 발행

발행인 전 광 우

편집인 김 민 수

발행처 국민연금공단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다길(신천동)

TEL : 2240-1114